민원·안내실 비치용

2009년도
농림수산사업안내서

2008. 12

이 안내서는 2009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수록된 일부 농림수산사업을 요약한 책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에 게시되어 있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차 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식량・원예분야) 제2권

1. 농지은행사업 ····· 1

2. 수리시설개보수사업 ····· 3

3. 중규모 용수개발사업 ····· 4

4. 농업용수 수질조사개선사업 ····· 5

5. 개인육종가 활성화 지원사업 ····· 6

6. 우수품종 증식보급사업 ····· 7

7. 농기계 구입지원사업 ····· 8

8. 농기계 임대사업 ····· 9

9. 농기계 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사업 ····· 10

10.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 11

11.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 ····· 13

12. 농작물 병해충방제 지원사업 ····· 15

13.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 16

14.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 17

15. 시군유통회사설립・운영지원 ····· 19

16. 농식품 소비지・산지상생협력 ····· 20

17. 산지유통종합자금지원 ····· 23

18.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 24

19. 인삼계열화사업 ····· 25

20.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 ····· 27
21. 농산물 자조금지원 ····· 29
22. 소비지유통활성화 ····· 30
23. 농산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 ····· 31
24.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 32
25.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 33
26.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 34
27. 수출업체 운영활성화 지원사업 ····· 35
28. 전통・발효식품육성지원사업 ····· 36
29. 농식품시설현대화 ····· 37
30. 생산자융・복합형 식품제조기업 육성지원사업 ····· 39
31. 우수농산물관리(GAP)제도 운영 ····· 40
32. 천일염산업육성지원 ····· 41
①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SPC) 설치사업 ····· 41
② 염전생산시설개선사업 ····· 42
33.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 ····· 43
①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 44
②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 ····· 45
③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 46
④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 47
34. 과원영농규모화사업 ····· 48
35. 과수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 49
36. 과수원정비지원사업 ····· 50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농촌개발 및 임업·산촌분야) 제3권

37. 친환경농업기반구축(지구조성)사업 ····· 51

38. 생물적 병해충방제(천적)사업 ····· 52

39.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사업 ····· 53

40. 친환경비료지원사업 ····· 54

41. 농업종합자금지원 ····· 55

42.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 56

43. 농림기술개발 ····· 57

44. 신기술보급사업 ····· 58

45. 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 ····· 59

① 창업농업경영인 육성 ····· 59

② 농산업인턴제 및 창업농멘토제 ····· 60

③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 ····· 61

46. 농업경영컨설팅사업 ····· 62

47. 농촌출신 대학생학자금 융자지원사업 ····· 63

48.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 64

49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 65

50.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 66

51.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 67

52.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 68

53. 농업인 재해공제사업 ····· 69

54.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 70

55.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 71

56.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 ····· 72
① 농어촌관광휴양단지 ····· 72
② 관광농원 ····· 73
③ 농어촌민박사업 ····· 75
57. 한계농지정비사업 ····· 76
58.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 77
59. 농축산경영자금지원 ····· 79
60. 농어촌주택개량사업 ····· 80
61.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 81
62. 산림경영계획 ····· 82
63.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 ····· 83
64. 산림소득증대사업 ····· 85
65. 임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 ····· 87
66. 산림바이오매스사업 ····· 89
67. 벌채운재로시설지원사업 ····· 90
68. 사립수목원지원사업 ····· 91
69.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 92
70. 조림・숲가꾸기 ····· 94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축산・수산분야) 제4권

71.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 96
72. 사료산업종합지원 ····· 98
73.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 99

74. 마필산업육성 ····· 101
75. 송아지생산안정사업 ····· 102
76.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지원 ····· 103
77. 양봉산업육성사업 ····· 104
78. 낙농체험 관광사업 ····· 105
79. 축산물도축 가공업체지원사업 ····· 106
80. 브랜드육 타운조성 ····· 107
81. 가축 및 계란수송 특장차량지원 ····· 108
82.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 109
83.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 ····· 110
① 가축계열화사업 ····· 110
② 브랜드 경영체지원사업 ····· 111
③ 축산물브랜드 컨설팅지원사업 ····· 112
84. 축산종합지도(HACCP)지원사업 ····· 113
85. 축산공제사업 ····· 114
86. 품질고급화 장려금지원 ····· 115
87.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지원 ····· 116
88. 수산자원 보호구역관리 ····· 117
89. 소규모바다목장사업 ····· 118
90. 수산물소비촉진사업 ····· 119
91. 환경친화형 양어용 배합사료지원사업 ····· 120
92.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공급 ····· 121
93. 고밀도부표보급지원사업 ····· 122
94. 양식장HACCP적용지원 ····· 123

95. 수산시장시설개선사업 ····· 124
96. 고효율 어선유류절감 장비지원 ····· 125
97. 어선기관 및 장비개량 ····· 126
98. 양식장비 임대사업 ····· 127
99.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 128
100.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 129
101. 수산업인턴제 및 창업어가 후견인제 ····· 130
102.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사업 ····· 131
103. 수산부문 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 132
104. 어업인 정책보험사업 ····· 133
105. 수산인 안전공제지원사업 ····· 134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5권

106. 배수개선사업 ····· 135
107. 방조제 개보수사업 ····· 136
108.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 137
109. 소규모용수개발사업 ····· 138
110. 지표수보강개발사업 ····· 139
111. 농업생산기반조성 ····· 140
112. 광역클러스터활성화지원사업 ····· 142
113.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 ····· 143
114.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건립 ····· 144
115.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 145

116.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 146
117. 전원마을조성사업 ····· 147
118.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 148
119.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 ····· 149
120.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150
121. 농공단지조성사업 ····· 151
122. 농촌활력증진사업 ····· 152
①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 152
② 향토산업육성사업 ····· 153
③ 특화품목육성사업 ····· 154
123.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사업 ····· 155
124. 산촌생태마을 조성 ····· 156
125.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 157
126. 수산식품 거점단지조성사업 ····· 159
127. 양식어장정화사업 ····· 160
128. 수산물유통시설건립사업 ····· 161
129. 어항기반시설조성 ····· 162
130. 어촌·어항 관광조성 ····· 163

1	농지은행사업(영농규모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사업목적

○ 주업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및 농지집단화 **지원**과 경영위기 농가의 **경영정상화 지원** 등으로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구조개선 추진

* 농지은행사업의 주 기능인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별도 운용(문의:1577-7770)

□ 지원대상

○ 영농규모화 : 자격요건이 되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창업농 등

* 신규 전업농육성대상자 신청요건 : 경영면적 2ha(밭 1, 시설 0.3)이상, 55세 이하

○ 경영회생 : 농업재해 피해율 50% 이상 또는 부채 5천만원 이상인 농업인

□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 영농규모화 : 농지 매입자금, 임대차선급금, 교환분합 자금 지원

○ 경영회생 :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고 영농권과 환매자격 부여

□ 재원 : 농지관리기금

□ 자금유형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업비	지 원 단 가
계	7,202	371,235	
· 농지매매	2,882	169,575	논 9,075원/㎡, 밭 10,587.5원/㎡ 초과액 자부담
· 임대차선급금	3,497	79,800	지역별 임차료 상한범위 내에서 협의된 금액
· 농지교환·분합	35	1,860	교환분합 차액 및 경지정리 환지시 청산금 지원
· 경영회생지원	788	120,000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

□ 지원조건

구 분	융자 금리	상환기간 및 방법
· 농지매매	연리 2.0%	연령에 따라 15~30년 원금 균분상환, 거치식 상환
· 임대차선급금	무이자	5~10년 분할상환
· 농지교환·분합	연리 2.0%	10년이내 분할 상환
· 경영회생지원	임대료:농지가격의 1%이내, 임대기간:5년(평가를 거쳐 3년 연장 가능) 매입·환매가격 : 매매시점 감정평가가격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 (02)500-1721, 1722

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사업처 : (031) 420-3358, 3378

□ **신청기관 :** 한국농촌공사 시·군 관할지사(농지은행팀) : 1577-7770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2권 27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 **사업목적**

○ 노후·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을 보수·보강하여 시설기능을 회복 또는 개선하여 재해위험 해소 및 영농편의 도모

- 저수지, 양·배수장 및 수로 보수·보강, 저수지 준설 및 안전진단 등

□ **지원대상**

○ 한국농촌공사 관리지역의 노후·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되어 재해위험이 있는 수리시설 및 용·배수로의 보수·보강

○ 한국농촌공사 관리지역의 용수공급 능력이 부족한 저수지의 준설

○ 한국농촌공사 및 시·군 관리지역 수리시설의 정밀안전진단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68년 ~ ○ 총사업비 : 110,518억원 ○ 사업규모 : 수원공 8,769지구 등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수리시설의 보수·보강 공사비 및 용지매수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정밀안전진단 소요경비 등으로 집행

□ **지원조건 :** 국고 100%(민간자본보조)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촌공사

□ **사업담당부서 :** 시·도 농업정책과, 한국농촌공사 해당지사 지역개발팀

□ **신청기관 :** 시·도, 한국농촌공사(031-420-3821)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2권 30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중규모용수개발사업

□ 사업목적

○ 수리시설이 미비된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등의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확보·공급함으로서 안정영농기반 구축 및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

□ 지원대상

○ 중규모(수혜면적 50~3,000ha)용수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 지원

□ 사업내용

○ 저수지, 양수장 등을 설치하여 농촌용수 확보

○ 용·배수로를 설치하여 용수공급 체계 구축

□ 자금유형

○ '09년 예산 : 80지구, 230,000백만원

구 분	계	국고보조	지방비	비 고
계	230,000	230,000	-	
○ 일반지구 69지구 - 준공 7지구 - 계속 62지구	183,135	183,135	-	
○ 총사업지구 - 계속 11지구	46,865	46,865	-	

□ 지원조건 : 국고100%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촌공사 사장

□ 사업담당부서 : 농식품부(용수자원과 500-1835), 시·도(농정과 등), 시·군·구(건설과, 농정과 등)

□ 신청기관 : 시·군 : 산업과(또는 농정과 등), 한국농촌공사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2권 32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농업용수 수질조사개선사업

□ 사업목적

○ 농업용 저수지·담수호의 수질개선을 위한 호소내 수질개선대책 및 퇴적물 준설로 깨끗한 용수공급기반 구축,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

□ 지원대상

○ 사업비(농특회계) : 한국농촌공사사장

-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침사지, 인공습지·식물섬, 물순환장치 설치 및 퇴적물 준설 등의 공사비 및 용지매수보상비, 시설부대경비로 집행

○ 조사설계비(농특회계) : 한국농촌공사사장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기본조사, 세부설계비 소요비용으로 집행

※ 시·군관리 저수지는 지원 제외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 사업내용

○ 저수지수질개선 :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저수지의 수면·유지(溜地)를 활용, 유지관리가 용이한 침사지, 인공습지·식물섬 등 설치

○ 퇴적물처리 시범사업 : 농업용 저수지 중 퇴적량이 많고 수질오염도가 높은 저수지를 대상으로 퇴적물(토사,오니) 준설

□ 재원 및 지원조건

구 분	사업비 및 조사설계비	수질조사비	비 고
'09 예산	173억원	32억원	
예산비목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지원조건	국고 100%	국고 100%	
재 원	농특회계	농특회계	

※ 수질조사비는 농업용수 수질측정망(800개소) 운영경비

□ 사업주관기관·부서

○ 수질측정망 운영 : 한국농촌공사(본사) 수질환경팀

○ 수질개선, 퇴적물처리 : 시·도(농촌개발과), 한국농촌공사 해당지사(유지관리팀)

□ 신청기관 : 시·도, 한국농촌공사 지사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2권 34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개인육종가 활성화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개인육종가의 신품종 육성 활성화 지원을 통한 민간육종의 저변확대로 국내 종자산업 발전기여

□ 지원대상

○ 신품종 개발비 및 해외 품종보호 출원비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소정의 신청서식에 의거 국립종자원에 신청한 자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확정한 자

□ 사업내용

○ 신품종개발비 지원

- 내국인으로서 개인 또는 상시근로자 20인이하의 국내 소규모 법인체가 개발·육성하여 국립종자원에 등록(2008년-2009년)한 신품종에 대하여 지원
- 심사를 거쳐 동일인에게 최대 5품종까지 지원

○ 해외 품종보호 출원비 지원

- 내국인으로서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신품종을 육성하여 2년간(2008년-2009년) 해외에 품종보호 출원한 품종에 대하여 지원
- 심사를 거쳐 동일인에게 최대 3품종까지 지원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사업비 261백만원(국비 100%), 품종당 5백만원까지 보조

□ 지원조건

○ 예산범위내에서 품종당 5백만원까지 지원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종자원

□ 사업담당부서 : 국립종자원(031-467-0275)

□ 신청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종자원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2권 35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우수품종 증식보급사업

□ 사업목적

○ 종자보급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딸기, 약용작물, 화훼 중 종자(묘)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대상으로 신품종·토종 종자를 공급하여 농업인의 로열티 부담 완화

○ 명확한 품종과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은 우량 종자(묘)를 공급함으로써 종자사고를 사전에 예방

□ 지원대상 및 사업주관기관

○ 딸기 원원묘 증식시설(1개소),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2개소), 화훼 종묘보급센터(1개소) : 시·도

○ 딸기 원묘 증식시설(3개소) : 농업협동조합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 사업내용

○ 종자증식시설 및 기자재를 위한 용도비 등

□ 재 원 : FTA기금

□ 자금유형(지원조건)

○ 딸기 원원묘 증식시설,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 화훼종묘보급센터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딸기 원묘 증식시설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담 40%

□ 사업담당부서 및 신청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농생명산업팀(☎ 02-500-1971)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2권 37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농기계 구입지원

□ 사업목적

○ 농기계 구입자금을 융자지원하여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

□ 지원대상

○ 농업인, 쌀전업농, 농업회사법인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및 RPC

○ 농기계 공급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농업기계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항 및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농작업에 사용하는 농업기계

□ 자금유형 및 지원조건

○ 총 사업비 : 1,14,300백만원(융자 710,000백만원, 자부담 304,300백만원)

○ 지원 조건 : 융자 70%, 자부담 30%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 02-2140-7921)

□ 사업담당부서

○ 농식품부 농생명산업팀(☏ : 02-500-1945,1946), 농업금융과(☏ : 02-500-1757)

○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 02-2080-6794)

□ 신청기관

○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 02-2080-6794)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2권 38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농기계임대사업

□ 사업목적

○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 중심으로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함

□ 지원대상

○ 농업인, 쌀전업농, 작목반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과수주산지역 조합 및 영농조합법인, 지역농협

□ 사업내용

○ 총 사업량 : 40개소

○ 임대농기계 구입 및 관리, 임대농기계 사후관리 지원

□ 자금유형

○ 사업단가 : 1,000백만원/개소(국고 500백만원, 지방비 500백만원)

○ 총 사업비 : 40,000백만원(국고 20,000백만원, 지방비 20,000백만원)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사업주관기관 : 농식품부 농생명산업팀(☏ : 02-500-1945, 1946)

□ 사업담당부서

○ 농식품부 농생명산업팀,, 각 시·도 농산지원과(팀)·농산(업)유통과·농산과·농업지원과·친환경농업과, 각 시·군·구 농산지원과(팀)·농산(업)유통과·농산과·농업지원과·친환경농업과

□ 신청기관 :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2권 40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농기계 생산비축에 소요되는 원자재 구입자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기계 적기공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농업기자재의 생산시설설치자금을 지원하여, 우량 국산기자재의 생산보급을 촉진

○ 농기계 수리용부품·장비확보자금을 지원하여 신속한 수리봉사를 촉진하고, 농기계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고장예방 및 농기계 이용율 증진

□ 지원대상

○ 농기계 생산지원 : 농기계 및 농업기자재 생산업체

○ 농기계 보관창고 : 일반농가, 마을내 5호이상 공동농가, 농기계 사후봉사업소 및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 농기계 수리용부품·장비지원 : 농기계 사후봉사업소 및 부품판매점 등

□ 사업내용

○ 농기계생산원자재 구입비축 지원 : 480억원
- 지원조건 : 연리 3%, 1년이내 상환

○ 생산시설・설비지원 : 120억원
- 지원조건 : 연리 3%, 3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농기계 보관창고지원 : 10억원
- 지원조건 : 연리 3%, 3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수리용부품・장비확보지원 : 210억원
- 지원조건 : 연리 4%, 1년거치 4년 상환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 02-2140-7921)

□ 사업담당부서

○ 농식품부 농생명산업팀(☏ : 02-500-1945,1946), 농업금융과(☏ : 02-500-1757)

○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 02-2080-6815)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2권 42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사업

□ 사업목적

○ RPC에 대하여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건조·저장 시설지원사업, 벼 매입자금 지원 등을 통해 고품질쌀 생산·유통의 핵심체로 육성

□ 지원대상

○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 RPC

○ 건조·저장 시설지원사업 : RPC, DSC, 비RPC 농협, 국산밀 생산자 단체

○ 벼 매입자금 : RPC, DSC

□ 사업내용

○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 가공시설 현대화, 농가교육·홍보비 지원(보조)

○ 건조·저장 시설지원사업 : 건조·저장 시설지원(보조)

○ 벼 매입자금 : 벼 매입자금 지원(융자)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및 지원조건

○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 9개소, 79.2억원

- 지원단가 : 쌀가공시설현대화 20억원(국고 40%, 지방비 20, 자담 40)
  교육·홍보비 2억원(국고 40%, 지방비 40, 자담 20)

○ 건조·저장 시설지원사업 : 104개소, 238.6억원

- 지원단가 : 3~9억원(국고 40~60%, 지방비 10, 자담 30~50)

○ 벼 매입자금 :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액 및 금리 차등(0~2%)

□ 사업주관기관

○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건조·저장 시설지원사업 : 시장·군수

○ 벼 매입자금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

○ 식량정책단 농산경영팀

□ 신청기관

○ RPC, DSC, 비RPC농협, 국산밀 생산자단체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2권 43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

□ 사업목적

○ 쌀시장 전면개방에 대비하여 쌀 품질향상 및 경영비 절감을 통한 쌀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들녘단위 50ha이상의 면적으로 조직화·규모화하여 쌀 농업을 경영하는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를 육성

□ 지원대상

○ 벼를 주작목으로 설립한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또는 벼 재배를 목적으로 구성한 농가조직체(들녘단위 50ha이상)

□ 사업내용

○ 최적경영체 생산시설 : 자동화 공동육묘장, 자연녹화온실, 상온통풍 종자건조저장시설 등 준영구적 시설의 신규설치, 시설확대 및 개보수 지원

○ 기계·장비지원 : 공동직파기, 개량용·배수물꼬 등 장비의 신규구입 지원

○ 최적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20백만원 이내)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사업량 : 10개소

○ 사업비 : 3,000백만원(국고보조 50%, 지방비보조 40%, 자부담 10%)

□ 지원조건

○ 개소당 300백만원(국고보조 150, 지방비보조 120, 자부담 30)

- 면적별(150ha이상·미만) 등급별(평가 실시) 차등지원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사업담당부서

○ 농식품부 : 농산경영팀(☏02-500-1932~3)

○ 시·도(시·군) : 고품질 쌀 생산 및 경영개선 담당부서

□ 신청기관 : 시장·군수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2권 47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사업

□ 사업목적

○ 긴급방제가 필요한 병해충 발생지역에 대한 방제사업비 지원을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수급에 기여

○ “해외병해충”의 확산방지를 위해 국가가 내린 방제명령(폐기·소각 등)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의 손실을 보상

□ 지원대상자

○ 사전방제 : 최근 3년내 500ha이상 병해충피해가 발생한 시군구

○ 사후방제 : 당해연도에 100ha이상 병해충피해가 발생한 시군구

○ 손실보상 : 식물방역법에서 정한 “금지병해충” 방제명령을 이행한 자

□ 지원조건

○ 사전방제 : 국고 40%, 지방비 40%, 자담 20%(국고 지원한도액 200백만원)

○ 사후방제 : 국고 40%, 지방비 40%, 자담 20%(국고 지원한도액 200백만원)

○ 손실보상 : 국고 100%

□ 사업비 신청

○ 사전방제 :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제사업비 신청서 제출(3. 5일 까지)

○ 사후방제 : 방제사업비 신청서 제출(5～10월중)

○ 손실보상 : 시도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손실보상청구서 제출(연중)

□ 사업담당부서

○ 중　앙 :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단 농산경영팀(02-500-1942)

농촌진흥청 현장기술지원과(031-290-2718)

○ 지자체 : 시·도(시·군·구) 농산담당과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2권 49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 사업목적

○ 농산물 유통단계에서 사용되는 지게차, 광폭차량, 컨베이어 등의 물류장비를 지원하여 농산물 유통의 표준화 및 기계화 촉진

○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등의 농산물 물류기기 이용 지원을 통한 농산물 규모화 및 하역기계화로 물류 효율화 촉진

□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 및 조직, 작목반, 공영도매시장, 가공공장·저온저장업체 등

□ 사업내용

○ 물류기기 구입지원 : 물류표준설비인증을 받은 파렛트, 전동차, 광폭차량, 결속기 등의 구입비 일부 지원

○ 물류기기 공동이용 :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다단식목재상자 등 임차료 일부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물류기기 구입지원 : 20,720백만원(국고 10,360, 자담 10,360)

○ 물류기기 공동이용 : 19,656백만원(국고 12,194, 자담 7,462)

□ 지원조건

○ 물류기기 구입지원 : 국고 50%, 자담 50%

○ 물류기기 공동이용 : 국고 60%, 자담 40%(공영도매시장출하시 국고 75%)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팀(02-500-2036)

□ 사업담당부서 : 농협중앙회 산지유통부(02-2080-6236)

□ 신청기관 : 농협중앙회 시·도본부, 시·군지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www.agrix.go.kr), 물류기기공동이용통합관리시스템(www.nhpool21.co.kr)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2권 50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 사업목적

○ 농산물의 포장재비 및 공동선별비를 지원하여 규격출하를 유도

□ 지원대상

○ 포장재비 : 표준규격 출하하는 생산자조직, 산지유통인, 개별 생산농가 등

○ 공동선별비 : 농식품부로부터 지정받은 산지유통전문조직, 공동마케팅조직

□ 사업내용

○ 표준규격 농산물을 출하하는 생산자조직 등에 대한 포장재 제작 또는 구입비 지원, 산지 생산조직의 규모화 및 시장교섭력 증대를 위한 공동선별비 지원

□ 자금유형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국고보조 : 품목별 포장재비(10～70%), 공동선별비(30～50%)

○ 사 업 량 : 포장재 338백만매, 공동선별 308천톤

○ 사 업 비 : 41,273백만원(포장재비 14,909, 공동선별비 12,000,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14,364)

□ 지원조건

○ 포장재비 : 농산물을 표준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생산자조직 및 산지유통인, 개별 생산농가의 포장재 제작 또는 구입비 지원

○ 공동선별비 : 농산물의 표준규격을 준수하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며,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하는 산지유통전문조직, 공동마케팅조직

□ 사업주관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사업담당부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31-463-1581)

□ 신청기관

○ 포장재비 및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 공동선별비 : (사업계획서)농협 시·군지부, (사업보조금)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2권 51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	시군 유통회사 설립·운영지원

□ 사업목적

○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의 확산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시·군 단위 이상으로 규모화·전문화된 농수산물 유통회사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

○ 소비지·산지간 직거래 확대로 우수 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

□ 지원대상

○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모 절차를 통해 선정된 시군 유통회사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보조

○ 사용용도 : 시군 유통회사 법인 설립, 브랜드 개발·홍보, 생산자 조직화·교육 등 설립초기 운영자금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사업량 : 10개소, 사업비 : 6,600백만원(국고 6,600)

□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

□ 사업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02-6300-1771)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유통정책팀), 농수산물유통공사(신유통팀)

□ 신청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팀(02-500-1986)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2권 53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농식품 소비지·산지 상생협력

I. 소비지·산지 협력사업

□ 사업목적

○ 개방 확대 및 소비지 대형매장 성장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소비지와 산지가 상생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

□ 지원대상

○ 소비지 유통·식품·외식업체, 농협중앙회 농산물 도매분사

□ 사업내용

○ 국내산 농수산물 직거래 매입자금

□ 재원 및 자금유형

○ 농안기금 융자

□ 지원조건

○ 유통업체, 도매분사 : 융자40%, 자부담60 (의무량 : 250% 이상)

○ 식품·외식업체 : 융자80%, 자부담20 (의무량 : 125%이상)

※ 융자조건 : 연리 4%(도매분사는 3%), 기간 1년

※ 사업의무량은 기존 직거래금액 이외에 신규 또는 추가로 달성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 유통정책팀(02-500-1981)

○ 농수산물유통공사 : 상생협력팀(02-6300-1471)

□ 신청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II. 농산물 직거래 매취지원

□ 사업목적

○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유통경로 다원화 및 농업인·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직거래 매취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

- 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대형유통업체·전자상거래 사업자 등에 직거래자금을 지원하여 산지와의 직거래 활성화 유도

□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전자상거래 사업자, 대형유통업체

□ 사업내용

○ 일반농산물(친환경농산물 포함) 매취사업자금

□ 자금유형

○ 농안기금 융자

□ 지원조건

○ 생산자단체(친환경농산물 포함) : 1년이내 상환, 3.0%금리, 지원금액의 125% 사업의무

○ 소비자단체(친환경농산물 포함)·전자상거래업체 : 1년이내 상환, 3.0% 금리, 지원금액의 125% 사업의무

○ 민간유통업체 : 1년이내 상환, 4.0%금리, 지원금액의 250% 사업의무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 유통정책팀(02-500-1981), 친환경농업팀(02-500-1959)

○ 농협중앙회 : 친환경농업팀(02-2080-6261), 소비촉진팀(02-397-7141)

○ 농수산물유통공사 : 도매시장부(02-6300-1291)

□ 신청기관

○ 농협중앙회 :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친환경농산물 포함)

○ 농수산물유통공사 : 소비자단체, 전자상거래업체, 대형유통업체

III. 가공용 수매지원

□ 사업목적

○ 농산물 수매자금 지원을 통해 대량 소비체계 구축 및 부가가치 향상

□ 지원대상

○ 가공공장 건설 사업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지 않은 업체(농업경영체 포함)

○ 국산 원료 및 부재료를 사용한 민속주, 지역특산주 등 제조업체

○ 국산 원료 사용 한식외식업체, 단체(위탁)급식업체, 농산물 전처리업체

※ 정부지원 가공공장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은 농협중앙회에서 지원

□ 사업내용

○ 가공용, 전통주류 제조용, 외식 및 농산물 전처리용 국내산 원료 농산물 수매(수산물은 제외)자금 지원

□ 자금유형

○ 농안기금 융자

□ 지원조건

○ 융자 80%, 자부담 20%(의무량 125%)

○ 금리 연 4%(농업경영체는 3%), 기간 1년(전통주류 제조업체는 2년)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 식품산업진흥팀(02-500-2031), 식품산업정책팀(02-500-2024)

○ 농수산물유통공사 : 자금지원팀(02-6300-1150), 외식산업팀(02-6300-1741)

□ 신청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2권 54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 산지유통종합자금 지원

□ 사업목적

○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규모화・전문화된 산지유통조직 육성

○ '09년에는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 및 수매지원(저장용, 산지가공)사업 추진

□ 지원대상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지방공사, 시군 유통회사 등 농산물 생산 또는 유통조직

□ 사업내용

○ 계약재배, 선급금 등 원물확보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

□ 재 원 : 농안기금

□ 자금유형

○ 산지유통활성화 : 4,565억원(공동마케팅 1,620, 전문조직 2,095, 일반조직 850)

○ 수매지원 : 854억원(저장용 460, 산지가공 394)

※ 수급안정사업은 '10년도에 신규예산 없음

□ 지원조건

○ 기금융자 80%, 자부담 20%(기간 1~3년, 금리 1~3%)

* 수급안정 사업의 지원금리는 기존대로 무이자 적용

□ 사업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사업담당부서

기관별	산지유통활성화	수급안정	수매지원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팀	채소특작팀 과수화훼팀	채소특작팀 식품산업진흥팀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조성팀	-	자금지원팀
농협중앙회	유통조직활성화팀	원예부	가공사업팀

□ 신청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2권 55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 사업목적

○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도모

□ 지원대상

○ 산지저온시설 : 산지유통종합평가 대상 APC, 산지유통전문조직, 공동마케팅조직

○ 저온수송차량 : 생산자조직(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화훼류 습식상자 지원 : 생산자 단체 및 작목반중 습식유통 생산자조직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습식유통 적격자

□ 사업내용

○ 산지저온시설 : 예냉설비, 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의 신규설치 및 개보수

○ 저온수송차량 :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탑차(2.5톤 미만, 2.5톤이상)

○ 화훼류 습식상자 지원 : 습식용기 임차·구입비, 수명연장제 구입비 등

□ 재 원 :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 자금유형

○ 산지저온시설 : 29개소, 3,047백만원(국고 1,219, 융자 914, 자담 914)

○ 저온수송차량 : 41대, 1,328백만원(국고 664, 자담 664)

○ 화훼류 습식상자 지원 : 107백만원(국고 52, 자담 55)

□ 지원조건

○ 산지저온시설 : 국고 40%, 융자 30, 자담 30

○ 저온수송차량, 화훼류 습식상자 지원 : 국고 50%, 자담 50%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팀(02-500-2036)

□ 사업담당부서 : 농수산물유통공사 신유통조성팀(02-2080-1581)
화훼사업부(02-507-1830)

□ 신청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각 관할 지사)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2권 59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	인삼계열화사업

□ 사업목적

○ 인삼 생산·가공·유통 등의 계열화를 통한 생산자의 영농비 부담경감과 소득안정 도모

□ 지원대상

○ 예정지관리를 포함한 재배과정에 대한 이력관리 등을 실시하여 고품질 청정 인삼을 생산하고, 이를 수매·가공·유통하여 생산·유통을 계열화하려는 조직(농협, 일반업체 등 포함)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융자, 자부담

○ 자금 사용 용도

- 계약재배 : 고품질 청정인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재배단계부터 이력관리를 실시하는 농가와 생산자단체(일반업체)간 계약재배를 실시하고 계약에 참여하는 농가에 무이자 계약자금 지원
- 수매사업 : 생산자단체(일반업체 포함)가 농가와 계약재배한 물량을 수매전 계약대상자(농가)의 생산이력을 포장별로 확인하고 잔류농약 분석을 실시한 후 수매, 수매자금 지원

* 일반업체는 생산자단체(농협)의 계약재배 의무수매물량을 구입하여 유통 및 가공을 할 경우에도 수매자금 지원

□ 자금유형(농안기금)

○ 사업비(백만원) : 65,250백만원(융자 52,192, 자담 13,058)

- 계약재배 : 18,000백만원(융자 14,400, 자담 3,600)
- 수매사업 : 47,250백만원(융자 37,792, 자담 9,458)

□ **지원조건**

○ 계약재배 : 융자 80%, 자담 20(5년거치 일시상환, 무이자)

○ 수매사업 : 융자 80%, 자담 20(5년거치 일시상환, 연리 3%)

□ **사업주관기관** : 농협, 일반업체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팀, 농협중앙회(인삼부)

□ **신청기관** : 농협, 일반업체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2권 60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

□ 사업목적

○ 주요 생산권역별로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일관지원함으로써 조직화・규모화・브랜드(Brand)화를 통한 인삼 전문 생산단지조성

□ 지원대상

○ 경작규모 200ha 이상 규모로 조직화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삼 전문생산단지로 기존의 농림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농업법인・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업법인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보조, 자부담

○ 자금 사용 용도

- 생산・유통시설현대화 : 우량종자 생산시설, 선별기, 증삼기, 건조기, 세척기, 탈피기, 저온저장고, 미생물 배양기 등 유통・가공시설 등 시설비
-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 : 브랜드 육성, 사업추진・운영 계획 수립, 수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홍보 컨설팅 비용

□ 재 원 : FTA기금

□ 자금유형

○ 사업량 : 2개소

○ 사업비(백만원) : 4,200백만원(국고 1,680, 지방비 1,720, 자담 800)

- 생산・유통시설현대화 : 4,000백만원(국고 1,600, 지방비 1,600, 자담 800)
-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 : 200백만원(국고 80, 지방비 120)

□ 지원조건

○ 생산·유통시설현대화 : 국고 40%, 지방비 40, 자담 20

○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 : 국고 40%, 지방비 60

□ **사업주관기관** : 시·도, 시·군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팀(02-500-2045)

□ **신청기관** : 시·군, 시·도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2권 60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	농산물 자조금지원

□ 사업목적

○ 생산자단체가 자발적으로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품목별 전국조직의 규모화를 촉진하여 시장교섭력 확보

○ 자조금단체를 육성하여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활동 등을 추진하여 시장가격 안정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

□ 지원대상

○ 지역조합, 품목조합, 품목조합연합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민법 제32조에 의해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를 회원으로 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 사업내용

○ 자조금단체에서 조성한 기금에 1:1 matching으로 정부에서 자금지원

- 지원형태 : 보조
- 사용용도 : 소비촉진 홍보, 시장개척 사업, 교육, 생산조절 등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사업량 : 26개소, 사업비 : 16,926백만원(국고 8,463, 자부담 8,463)

□ 지원조건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 : 채소류(채소특작팀), 과실·화훼류(과수화훼팀), 친환경농산물(친환경농업팀), 육묘(농생명산업팀)

□ 신청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품목담당과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2권 62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	소비지유통활성화

□ 사업목적

○ 농산물도매시장 및 공판장으로 농산물 출하를 유인하여 상장거래 정착, 산지집하와 대금결제 가능강화로 출하자와 소비자를 보호

□ 지원대상

○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공공출자법인, 민영도매시장 포함), 시장도매인, 개설자별 중도매인 평가결과 우수이상 중도매인

○ 농협중앙회 공판장, 회원조합 공판장 및 농수산물유통공사 화훼공판장

□ 사업내용

<도매시장·공판장>

○ 선 도 금 : 도매시장·공판장으로의 출하증대를 유도하여 도매시장·공판장

○ 결제자금 : 도매시장·공판장에 출하되는 농산물의 대금결제자금

<산지유통인>

- 선 도 금 : 생산자(단체)와의 출하약정을 위한 선도금

□ 자금유형

○ 사업비 : 791백만원(융자 100%)

□ 지원조건

○ 출하선도금, 대금결제자금 : 1년이내, 3.0~4.0%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 유통정책단 유통정책팀 (☎02-500-1985)

○ 농림수산식품부 : 유통정책단 과수화훼팀 (☎02-500-2058)

○ 농수산물유통공사 : 도매시장팀 (☎02-6300-1294)

○ 농협중앙회 : 공판지원부 (☎02-397-7134)

□ 신청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도매시장팀), 농협공판장(농협중앙회)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2권 63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농산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

□ 사업목적

○ FTA, DDA 등 시장개방 확대와 대형유통업체 성장에 따른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수 농산물브랜드 육성

□ 지원대상 : 브랜드경영체(책임경영 및 독립채산 법인체)

○ 사업품목의 지역 통합 브랜드를 운영할 수 있는 조직과 관리 체계 구축

※ 신설법인은 '09. 6월말까지 참여조직간 지분, 시설부지 등을 확정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한 경우에 한하여 선정평가 대상에 포함

○ 대상품목 : (원예작물) 채소류·특작류·화훼류, (밭작물) 감자, 옥수수, 잡곡류 등

□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 조직운영 및 마케팅 지원 : 기금보조 40%(밭작물은 100%), 지방비 60%

○ 생산기반 조성 및 종합처리시설 : 기금보조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총사업비(개소당) : 2010년도 신규사업체

○ 원예작물 : 95억원(기금보조 38, 지방비 43, 자부담 14)

- 3년간 배분 지원 : 1년차 30%, 2년차 30%, 3년차 40%

* '10년 신규사업체부터 융자금은 산지유통활성화사업에서 통합지원

○ 밭작물 : 시설사업 10억원(기금보조 4, 지방비 4, 자부담 2), 1년간 지원

- 조직운영 및 마케팅 지원 : 25백만원/개소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시·도지사)

□ 사업담당부서 : 원예작물(채소특작팀), 밭작물(농산경영팀)

□ 신청절차(일정) : 브랜드경영체가 시·군·구에 신청(1월말까지)

○ 시·군·구에서 시·도로 제출(2월말까지) → 농식품부(3월말까지 접수)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2권 65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 사업목적

○ FTA/DDA 등에 대응하여 원예전문생산단지에 대한 시설 현대화, 규모화, 전문화를 지원하여 안정적 수출확대 기반 구축

□ 지원대상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원예전문생산단지(채소·화훼)내 시설현대화 또는 시설 증·개축을 원하는 농업인(농업법인 포함) 및 생산단체

□ 사업내용

○ 시설개선 및 현대화 : 공정육묘장, 양액시설, 자동환경제어시설, 에너지 절감형 난방·보온시설, 유통개선 및 안전관리 시설 등

○ 단지 증·개축 : 유리온실, 자동화 비닐온실 및 부대시설 증·개축

□ 자금유형

○ 사업량 : 13개소(시설현대화 8, 단지증개축 5)

○ '09예산 : 67,160백만원 (보조 14,920, 융자 37,320, 자부담 14,920)

□ 지원조건

○ 국고 재원 : 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융자 60(금리 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자부담 20

* 농가의 부담분(융자) 경감을 위해 지자체에서 자율적 지방비 대체 보조 가능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사업담당부서

○ 시·도(농산유통과, 친환경농업과 등), 시·군·구(농림과, 농정과 등)

□ 신청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2권 66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 사업목적

○ 유류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에너지 절감형 난방·보온시설 설치 지원

□ 지원대상

○ 10a이상 시설원예(채소·화훼)를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원예전문생산단지는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을 통해 시설현대화(에너지 절감시설 포함) 및 단지 증개축이 지원되므로 지원상에서 제외

□ 사업내용

○ 에너지 절감형 난방·보온시설[다겹보온커튼, 고효율(전기·석탄·중유·목재·경유) 난방기,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자동 보온덮개 등]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사업비 520억원(국고보조 156, 융자 104, 지방비 156・자부담 104)

○ 지원조건 : 국고 30%, 융자 20(금리 3%, 3년거치 7년상환), 지방비 30, 자담 20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채소특작팀), 시·도 및 시·군(농산물유통과, 친환경농업팀 등)

□ **신청기관 :** 시설설치 해당지역 시·군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2권 67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 사업목적

○ 농식품을 수출하는 수출업체에 대하여 선별, 포장, 운송 등 수출물류비 및 수출보험, 안전성 확보 등 수출인프라 강화를 위해 지원하여 수출확대 도모

□ 지원대상

○ 국내산 농식품 중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을 수출하는 수출업체(농가 포함)

□ 사업내용

○ 수출물류비(수출시 소요되는 선별비, 포장비, 운송비 등), 수출인프라강화 사업비(수출보험, 안전성 확보 등)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규모 및 유형 : '09년 38,277백만원, 보조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팀(02-500-2029)

□ 사업담당부서 : 농수산물유통공사 원예수출팀(02-6300-1352) 및 각 관할지사

□ 신청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원예수출팀 및 각 관할지사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2권 68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	수출업체 운영활성화지원사업

□ 사업목적

○ 농식품 수출업체가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서 국산 농식품의 수출을 촉진하고 국내 가격안정과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지원대상

○ 국산 농식품을 수출하는 업체, 생산자단체, 농업인

□ 사업내용

○ 국산 농식품 수출업체의 원료 및 부자재구입, 저장, 가공 등 운영자금

□ 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자금유형 및 조건 : '09년 343,000백만원, 융자

○ 대출금리

- 일반 수출업체 : 연 4.0%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는 연 3.0%

※ 대출취급기관은 매년 대출한 수출업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최우수업체는 1.0%p, 우수업체는 0.5%p 인하금리 적용 가능

○ 대출기간 : 12개월

○ 대출취급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일반업체), 농협중앙회(회원농협)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팀(02-500-2029)

□ 사업담당부서 : 농수산물유통공사(자금지원팀 02-6300-1152)
농협중앙회(수출과채팀 02-2080-6187)

□ 신청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각 관할지사), 농협중앙회(계통사무소)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2권 69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	전통・발효식품 육성사업

□ 사업목적

○ 전통・발효식품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통・발효 식품 제조・가공업체에 시설현대화자금을 지원하여 품질경쟁력 향상 및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 지원대상

○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의 시설을 현대화하고자 하는 업체

□ 사업내용

○ 전통발효식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의 신축・증축・개보수 및 시설투자 자금 등 지원

□ 재 원 :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 자금유형 및 지원조건

○ 지원기준 : 융자 80% 이내, 자부담 20%,

○ 지원(융자) 조건 : 연3.0%,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 업체당 지원 한도액 : 400백만원 이하(총사업비 500백만원의 80%)

□ 사업 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 담당부서 : 식품산업처(식품기업육성팀)

□ 신청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각 지사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2권 69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	농식품 시설현대화

□ 사업목적

○ 식품 제조·가공업체의 경쟁력 제고, 농식품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

□ 지원대상

○ 식품제조·가공, 산지가공, 신선편이 농산물가공, 축산물가공, 기타 농식품 등 식품제조업체

○ 도시지역의 중대형 농산물 판매 지역조합, 돼지고기 열처리 가공장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융자, 자부담

○ 자금 사용용도

- 식품제조 및 신선편이 농산물 가공업체의 식품안전 인증(HACCP)을 위한 시설현대화
- 농산물 판매장 및 지원시설(사무실, 창고 등)의 건축비 및 임차보증금
- 돼지고기 열처리 가공 및 중대형 농산물 판매장의 관련 시설현대화

□ 자금형태(농안기금)

○ 지원규모 : 70,000백만원

- 식품제조업체 시설현대화(35,000), 선편이 시설현대화(11,000), 소비지 유통시설 활성화(10,000), 돼지고기 열처리 가공장(14,000)

○ 대출기한 : 3년 거치 7년 상환(돼지고기 열처리 가공장 : 5년거치 10년 상환)

□ 지원조건

○ 식품제조 및 신선편이 농산물가공 시설현대화 : 융자 80%, 일반업체 4%,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3%

○ 소비지유통시설 활성화 : 융자 50%, 연 3%

○ 돼지고기 열처리 가공장 : 융자 70% 연 3~4%

□ **사업주관기관 :** 시·도, 농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팀, 식품산업정책팀, 유통정책팀, 축산경영팀

□ **신청대상자 :** 식품제조업체, 신선편이업체, 지역조합, 축산물가공업체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2권 70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	생산자 융·복합형 식품제조기업 육성지원 사업

□ 사업목적

○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를 통한 식품제조기업에 안정적 원료공급과 제조·마케팅 능력을 갖춘 식품제조기업 육성으로 생산자와 식품기업 상생

○ 국산 농수산물 판로 확대를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어업의 부가가치 창출

□ 지원대상

○ 생산자와 식품제조업체가 공동출자하여 업체를 운영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업체

□ 사업내용

○ 식품업체의 새로운 모델로서 농수산물 생산자와 식품제조업체간에 공동출자한 융·복합형 식품제조기업에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

□ 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자금유형

○ 사업비 10,000백만원, 총 사업소요액의 80%이내 융자, 자부담 20%이상

- 시설자금 : 생산자 융복합형 식품제조업체의 저장·가공·부대시설의 신축·증축·개축 및 물류장비 구입 등 시설에 소요되는 자금
- 운영자금 : 융복합형 식품제조업체의 농수산물 저장·가공·운송·부자재 구입비 등 식품제조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지원조건

○ 시설자금 : 연리 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연리 3%, 2년 상환

□ 사업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팀(02-500-2033~2034)

□ 신청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본사 및 각 지사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2권 71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	우수농산물관리(GAP)제도운영

□ 사업목적

○ GAP 농산물의 수확후 처리·가공을 위해 우수농산물을 관리하기 위한 생산・유통시설 등에 GAP 기준에 부합되는 위생시설·장비 등을 갖추게 함으로써 안전 농산물 공급망 구축

□ 지원대상

○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3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업체를 자체평가를 통해 선정하여 위생시설·장비 지원

- 일정규모 이상이며 실질적으로 산지유통센터의 기능을 하는 시설
- 규모기준 : 유통시설(집하선별포장장, 저온저장 및 예냉시설)규모가 660㎡ 이상인 경우

□ 사업내용

○ GAP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위생시설・장비 지원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 자금유형

○ '09사업비 : 국고보조(30%), 지방비(20%), 자부담(50%), 24,02억원(30개소)

□ 지원조건

○ 생산자단체 :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시장・군수 :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주관기관 : 지자체(시장・군수 포함)

□ 사업담당부서 :

○ 농림수산식품부 : 소비안전팀(☏ : 02 - 500 - 1998, 1999)

○ 시・도 및 시・군・구 : 당해 지자체 직제에 따름(농정, 농업, 유통 등)

□ 신청기관 : 시・군・자치구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2권 71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①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설치사업

□ 사업목적

○ 천일염의 수집, 저장, 선별, 유통 시스템을 규모화, 집단화, 현대화하여 유통구조 개선

□ 지원대상

○ 공기업 및 천일염 영농조합법인 등

□ 사업내용

○ 사업지원 : 국고(40%), 지방비(30%), 자부담(30%)

○ 사용용도 : 산지종합처리장 건축비 및 기계류 구입비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자담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2	3,600	1,440	1,080	1,080

□ 지원조건

○ 국비 40%, 지방비 30%, 자담 30%

□ 사업 주관기관 : 시장・군수

□ 사업 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팀

□ 신청기관 : 관할 시・군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2권 73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②	염전생산시설 개선 사업

□ 사업목적

○ 천일염의 품질별 보관이 가능하도록 노후화된 소금창고를 개선하고 천일염 품질을 결정하는 해주 시설을 개선하여 천일염품질향상 기여

□ 지원대상

○ 천일염생산자, 천일염영농조합법인, 천일염작목반, 천일염일반단체

□ 사업내용

○ 사업지원 : 국고 융자(70%), 자부담(30%)

○ 사용용도 : 소금창고, 해주 시설 개선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국고융자	지방비	자담
소금창고 시설개선사업	15	1,800	1,260	-	540
해주 시설개선사업	110	880	616	-	264

□ 지원조건

○ 국비 융자 70%, 자담 30%

□ 사업 주관기관 : 시장·군수

□ 사업 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팀

□ 신청기관 : 관할 시·군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2권 74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

□ 사업목적

○ 개방화에 대응하여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품질 과실 생산에서 유통까지 필요한 사업을 지원

□ 지원대상

○ 농협(품목, 지역), 조합공동사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단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은 지역과수발전계획에 참여하는 농가

＊ 생산자단체 연합사업단은 제외

□ 사업내용

○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 과수 생산기반 정비사업
○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
○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기금(FTA 기금)

□ 지원조건

○ 생산시설현대화 : 국고 25%, 지방비 25, 융자 30, 자부담 20

- 융자 : 연리 3%,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 과수기반정비 : 국고 80%, 지방비 20

○ 거점산지유통센터 : (공공) 국고 50%, 지방비 50
(일반)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과실브랜드육성 :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고당도 과실 생산자재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

□ 사업담당부서

○ 사업총괄기관 : 농식품부 과수화훼팀 (☏ : 02-500-2055, 2056)

○ FTA기금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FTA기금팀(☏ : 02-6300-1172~5)

○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자금지원팀(☏ : 02-2080-6782)

□ 신청기관 : 시·도 및 시·군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2권 75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①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

□ 사업목적

○ 고품질·안전과실생산과 생산비절감 및 생산성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제고

□ 지원대상

○ 지역(품목단위)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고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조직)에 생산량의 80% 이상을 3년 이상 출하 약정한 농가

□ 사업내용

○ 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설치자금

- 우량품종갱신, 비가림시설, 관수시설, 방풍시설, 지주시설, 시설하우스 개보수 등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기금(FTA 기금)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5%, 융자 30%, 지방비 25%,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3%,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

□ 사업담당부서

○ 농식품부 : 과수화훼팀(☎ 02-500-2055, 2056, Fax 503-7259)

○ 시·도(농산유통과, 원예유통과, 유통특작과 등), 시·군(농림과, 농정과 등)

□ 신청기관 : 시·도 및 시·군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2권 77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②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 사업목적

○ 과수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과수수출단지 정비 및 대형유통업체 출하 등을 통한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으로 육성 지원

□ 지원대상

○ 과수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로 개소당 사업규모가 50ha이상(최소 30ha이상)으로 사업수혜농가들이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5년 이상 생산량의 80%이상을 출하약정한 지구

□ 사업내용

○ 용수공급·배수로 경작로 등 생산기반시설의 정비

○ 지원단가 : 조사설계비 : 461천원/ha, 사업비 : 32,520천원/ha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기금(FTA 기금)

□ 지원조건

○ 조사설계비 : 국고보조 100%, 사업비 : 국고 80%, 지방비 20%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

□ 사업담당부서

○ 농식품부 : 과수화훼팀(☎ 02-500-2055, 2056, Fax 503-7259)

○ 시・도(농산유통과, 원예유통과, 유통특작과 등), 시・군(농림과, 농정과 등)

○ 농촌공사 : 조사계획팀(031-420-3626)

□ 신청기관 : 시・도 및 시・군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2권 78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③	권역별거점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

□ 사업목적

○ 과수 주산지역에 규모화·현대화 된 산지유통시설(APC)을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유통시설 계열화의 중심축(Hub)으로 육성하고 산지의 마케팅 경쟁력 및 교섭력 증대

□ 지원대상

○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지원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

□ 사업내용

○ 연간 과일 선별물량 5천~1만톤 내외의 유통시설 설치 및 보완
- 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시설, 위생시설, 신선편이시설 등을 원칙적으로 일괄지원

○ 지원단가 : 15,000백만원 내외/개소(부지구입비 제외)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기금(FTA 기금)

□ 지원조건

○ 지원비율
- 공공유형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일반유형 : 국고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사업기간 : 3년(1년차 5%, 2년차 35%, 3년차 60%)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

□ 사업담당부서

○ 농식품부 : 과수화훼팀(☎ 02-500-2055, 2056, Fax 503-7259)

○ 시·도(농산유통과, 원예유통과, 유통특작과 등), 시·군(농림과, 농정과 등)

○ 농수산물유통공사 : 산지유통부(02-6300-1251)

□ 신청기관 : 시·도 및 시·군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2권 79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④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 사업목적

○ 과실시장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다국적 과실 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국내 과실 대표브랜드와 과실주산지를 중심으로 지역공동브랜드를 육성함으로써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시행주체

- 2개 시·군 이상 또는 단일 시·군으로 브랜드사업 참여조직 구성원의 주 과종재배면적이 500ha이상 규모화 된 지역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 경영체

□ 사업내용

○ 과실 공동브랜드화 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포괄 지원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기금(FTA 기금)

□ 지원조건

○ 전국공동브랜드 : 연차별 사업수요 반영

○ 지역공동브랜드 : 개소당 연간 4억원 내외(3년간 균분지원)

구분	전국공동브랜드	지역공동브랜드
브랜드 품질관리지원	국고보조100%	국고보조40%, 지방비20, 자부담40
마케팅 운영지원	국고보조50%, 자부담50	국고보조40%, 지방비20, 자부담40
브랜드 홍보지원	국고보조100%	국고보조40%, 지방비40, 자부담20

□ 사업주관기관 : 농식품부, 시·도(시·군)

□ 사업담당부서

○ 농식품부(총괄) : 과수화훼팀(☎ : 02-500-2051, 2052)

○ 시・도(농산유통과, 원예유통과, 유통특작과 등), 시・군(농림과, 농정과 등)

□ 신청기관 : 시·도 및 시・군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2권 82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 과원영농규모화사업

□ 사업목적

○ 과원매매와 임대차를 통하여 과수 재배농가의 과원 규모를 확대하고 과원을 집단화함으로써 경쟁력 및 개방적응력 제고

□ 지원대상

○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과수농가 및 과수를 주작목으로 설립한 농업법인

□ 사업내용

○ 한국농촌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 소유과원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과원의 규모화를 통하여 경쟁력 제고를 희망하는 과수농가에게 매도 또는 임대

□ 재원 및 지원조건 : 자유무역협정이행기금(FTA기금), 국고융자 100%

□ 자금유형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업비	지 원 단 가
계	297	31,700	
· 과원매매	221	26,460	12,100원/㎡(과수목 포함), 초과액 자부담
· 과원임대차	76	5,198	지역별 임차료 상한범위 내에서 협의된 금액

□ 지원조건

구 분	융자 금리	상환기간 및 방법
· 과원매매	연리 2.0%	연령에 따라 15~30년 원금 균분상환, 거치식 상환
· 과원임대차	무이자	5~10년 분할상환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과수화훼팀(02-500-2054)
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사업처(031-420-3378)

□ 신청기관 : 한국농촌공사 농지소재지 관할 지사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2권 83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5	과수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 사업목적

○ 과실의 수입증가로 국산 과실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일정부분을 보전함으로써 과수 재배농업인 등의 경영안정 도모

□ 지원대상

○ 고시일('04.5.24) 이전부터 당해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당해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 후 직불품목 D/B화 관리농가로서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

□ 사업내용

○ 발동요건 충족(①, ②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시 일정금액의 직불금 지급

① 국내생산량 대비 칠레산 수입량의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으로 증가

- ‣ 당해년도 국내생산량 대비 수입량 비율이 10%이상이면서 전년보다 수입량 비율이 증가
- ‣ 당해연도 국내생산량 대비 수입량 비율이 10%미만인 경우에는 전년보다 수입량 비율이 5%P이상 증가

② 지원대상품목의 당해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 ‣ 기준가격 : 지원대상품목 고시일 직전 5년간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80%를 곱하여 산출한 가격
- ‣ 지원대상품목별 기준가격 : 시설포도 4,560원/kg, 키위 1,700원/kg

□ **재원 및 지원조건** : 자유무역협정이행기금(FTA기금), 국고보조 100%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과수화훼팀(02-500-2053,), 지자체 원예담당부서

□ **신청기관** : 시·군·자치구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2권 85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6	과수원정비지원사업

□ 사업목적

○ 과실류 수입 개방에 대응하여 경쟁력이 낮은 과원을 폐원할 경우 굴취비 등 작업비를 지원하여 신속히 폐원함으로서 경쟁력 없는 과수원의 구조조정 촉진 및 방치 과원이 병해충 서식처가 되는 것을 방지

○ 사과·배 농가에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과수 병의 조기 박멸로 안전영농 도모

□ 지원대상

○ 사과·배·포도·단감·감귤 등의 과수원 중 방치과원, 병해충발생과원, 재배기술 생산성경영능력 등이 낮은 과수원 소유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과수원의 과수 절단, 굴취 및 과원 원상복구 등에 소요되는 실작업비를 지원 (과종별·시설별 6~9백만원/ha 이하)

□ 재원 및 지원조건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구조개선사업계정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09 사업비

(단위 : ha, 백만원)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1,352ha	3,166	3,166	1,583	-	1,583	-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과수화훼팀(02-500-2049)

□ **신청기관** : 과원소재지 관할 시·군·자치구(원예담당부서)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2권 86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7	친환경농업기반구축(지구조성)사업

□ 사업목적

○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 지원대상

○ 친환경농업지구조성을 희망하는 지역(마을)에서 사업을 원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사업내용

○ 지원단가 : 사업지구당 200~1,000백만원 범위내에서 차등지원

○ 사업내용 : 친환경농자재생산시설·장비,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장비,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장비, 친환경농업 교육시설·장비 등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사업량 : 42개소

○ 사업비 : 21,000백만원(국비보조 8,400, 지방비 8,400, 자부담 4,200)

□ 지원조건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팀(02-500-1955)

□ 신청기관 : 시·군·구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3권 88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8	생물적병해충방제(천적)사업

□ 사업목적

○ 시설원예작물의 합성농약에 의한 해충방제를 천적을 활용한 생물적 방제방법으로 전환하여 농약사용량을 줄이고,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 수요 충족, 실천농가의 소득증대·노동력절감 및 농약피해로부터 농업인의 건강보호

□ 지원대상

○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피망), 오이, 멜론, 포도, 수박, 참외 등 지원대상작물을 시설온실에서 재배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작물의 해충방제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증식·보급되는 천적구입비 일부 지원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사업량 : 2,500ha

○ 사업비 : 18,250백만원(국비보조 3,650, 지방비 5,475, 자부담 9,125)

□ 지원조건

○ 국고 20%, 지방비 30%, 자부담 50%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팀(02-500-1955)

□ 신청기관 : 시·군·구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3권 90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9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유휴 농경지에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토양에 환원함으로써 토양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지력증진과 농업환경의 유지·보전

□ 지원대상

○ 유휴농경지에 녹비용 작물 재배를 희망하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지원종자 : 자운영, 호밀, 헤어리벳치, 클로버 등 녹비효과가 있는 녹비용 작물 종자

□ 사업내용

○ 자금재원 : 국비, 지방비

○ 지방비를 포함하여 녹비용 작물 종자 농가공급가격 100% 지원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155천ha, 26,942백만원 (국비 13,471, 지방비 13,471)

□ 지원조건

○ 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주관기관 : 지자체(시·도, 시·군·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팀(02-500-1957)

□ 신청기관 : 지자체(읍·면·동)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3권 92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	친환경비료지원(토양개량제지원)

□ 사업목적

○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 지원대상

○ 규산 : 유효규산함량이 130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 : PH 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 사업내용

○ 유효규산함량 부족 논과 산성 밭에 규산·석회를 시용하여 토양개량

□ 지원조건

○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장·군수·구청장), 농협중앙회(지역농협)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 식량정책단 친환경농업팀(전화 : 02-500-1961~2)

○ 시·도 :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농산(유통)과, 농정과(특·광역시 : 농정과)

○ 시·군·구 : 친환경농업과, 산업과·농정과(산업계)

○ 농협중앙회 자재부 비료팀, 지역농협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신청서 제출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3권 92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1	농업종합자금지원

□ 사업목적

○ 품목별, 기능별 분산 지원되는 농업분야의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종합지원 함으로써 농업정책자금의 효율성 제고

□ 지원대상

○ 해당분야의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평가를 통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은 농업인, 객토희망농가, 1년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농업법인, 농촌가공업자, 농기계생산업자, 종자산업법에 의한 종자업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육종가

□ 사업내용

○ 시설, 개보수, 운전자금 및 농기계구입자금을 일괄지원하고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금액을 필요한 시기에 지원

□ 재 원 : 농협자금

□ 자금유형

○ 사업비 18,000억원(농협자금 100%), 전액융자

□ 지원조건

○ 금리 : 연 3%

○ 상환조건 : 시설자금 3~5년거치 10년분할상환, 개보수자금 2~3년거치 3~7년분할상환, 운전자금 2년일시상환, 농기계자금 1년거치 4~7년분할상환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02-2080-6818)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농업금융과 (02-500-1757)

□ 신청기관 :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 (농협시군지부 및 취급조합)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3권 95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 사업목적

○ 신·재생에너지원 및 겨울철 농가소득원 확보를 위한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의 국내생산 확대 가능성 점검

□ 지원대상

○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생산하는 바이오디젤용 유채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국비 70%, 지방비 30%)

○ 지원방법 : 파종기 30%, 수확기 70%

○ 자금 사용용도 :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 보리 재배소득과의 차액(170만원/ha) 보전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사업량 : 1,350ha

○ 사업비 : 1,606.5백만원(국비 70%, 지방비 30%)

※ '09년도 사업비는 '08년도 파종면적에 대한 수확기분(70%) 보조금 지원

※ '09년 파종기(10월)분 보조금(30%)은 '09. 6월 2차년도('08.10～'09.6) 시범사업 성과 분석 후 별도 계획수립 추진

□ 지원조건

○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사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지원

□ 사업추진 주체 : 지방자치단체(도)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생명산업팀(☎ : 02-500-1969)

□ 신청기관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3권 98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3	농림기술개발

□ 사업목적

○ 산업화 기술개발 지원으로 농림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기술력을 성장 동력원으로 하는 농산업 육성하기 위한 농림기술의 개발과 첨단과학 등을 응용하여 농림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 추진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농산업체, 대학, 연구·지도기관, 농민(단체)등 산·학·연 협동연구팀
* 농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 단독참여 가능

□ 사업내용

○ 국고보조금 형태로 연구개발비(인건비, 연구수행 직·간접비 등) 지원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국고보조)

○ 기획·일반과제 : 206과제, 46,583백만원

○ 식품기술개발 : 99과제, 15,000백만원

○ 농산품수출연구 : 35과제(사업단), 25,000백만원

□ 지원조건

○ 참여기업 부담금(Matching Fund)

- 대 기 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이상 부담
-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 부담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 : 기술정책과

□ 신청기관 : 농림기술관리센터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3권 99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4	신기술보급사업

□ 사업목적

○ 새로운 농업기술보급 사업 추진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 농업경쟁력 향상 도모

□ 지원대상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해당 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및 단체 등

- 시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농업인 및 단체 선정

□ 사업내용

○ 안전 농축산물 생산과 친환경농업 기술시범사업 추진

- 식량·소득·친환경농업 시범사업 추진 : 34종 528개소

○ 농산물 품질 고급화(탑프로젝트) 및 도·농 생활기술 시범사업 추진

- 탑프로젝트 2종 97개소, 도·농생활기술 시범사업 6종 84개소

□ 재 원 : 일반회계 국비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시·군 농업기술센터)

□ 사업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현장기술지원과(031-299-2701~2)

□ 신청기관 : 시·군 농업기술센터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3권 100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5-①	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

□ 사업목적

○ 영농정착을 희망하는 농업인력을 발굴·육성하여 농업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미래 농업 전문인력 체계적 확보·유지

□ 지원대상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특별·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시·군 농정심의회를 거쳐 창업농업경영인으로 선발·확정한 자

-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자금을 받아서 상환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단, 이미 창업농업경영인으로 선발되어 자금을 지원받은 자, 낙농분야의 납유처 미확보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내용

○ 농업경영컨설팅비용(자부담금의 60%이내), 경종 및 축산분야 창업비용

- (경종) 농지구입, 고정식온실 설치, 과원조성 등 기타 농업기반시설의 설치
- (축산)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가축입식, 사료저장시설 등 기타 축산기반시설의 설치

* 단, 한(육)우 입식자금은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잠정 지원 중단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사업비 88,000백만원(국비 30%, 금융기관자금 70%), 전액 융자

□ 지원조건

○ 금리 및 융자기간 : 연리 3%,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15년)

○ 창업농업경영인의 영농설계에 따라 20 ~ 120백만원까지 차등지원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지구청장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

□ 신청기관 :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3권 101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5-②	농산업인턴제

□ 사업목적

○ 잠재농업인력의 선도농가 실무연수를 통한 영농정착 동기부여로 농업부문 신규인력 유입 촉진

□ 지원대상

○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만 18~44세의 미취업자 또는 사업시행년도 3월31일 현재 농고(3학년)·농대에 재학중인 자

* 농림수산식품부의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는 45세 연령제한과 관계없이 이수년도를 제외하고 추가 5년간 사업신청 가능

□ 사업내용

○ 18~44세의 미취업 청(소)년의 영농분야 실무 연수 지원

○ 인턴을 채용한 선도농가에 자금지원(인턴 1인당 월60만원 한도, 월보수의 50% 이내로 6백만원까지 지급)

□ 자금유형 및 지원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보조 30%

□ 사업주관기관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 농업정책국 경영인력과(전화 02-500-1730~31)

○ 시·도 : 농정담당부서

○ 시·군 : 농정담당부서 또는 농업기술센터

□ 신청기관

○ 인턴 연수장소의 해당 시·군(읍·면)의 담당과

- 접수기관 : 2009. 1. 1 ~ 2. 25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3권 102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5-③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 사업목적

○ 우수한 창업농업경영인의 영농규모 확대 및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유능한 미래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유지에 기여

□ 지원대상

○ 선정후 5년 이상 경과된 창업농업경영인으로 현재 영농에 종사중인 농업인

- 단, 추가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외

□ 사업내용

○ 창업농업경영인의 영농규모 확대 및 개보수 자금 지원

- 농지구입, 하우스 시설,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가축입식 자금 지원 등

□ 지원조건

○ 지원대상자의 영농설계에 따라 8천만원까지 지원

- 연리 3%, 융자 100%,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 농업정책국 경영인력과(02-500-1730~31)

○ 시·군 : 농정부서, 농업기술센터

□ 신청기관

○ 신청자의 주요 영농종사지역의 시·군사무소

○ 신청기간 : '09.2.15일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3권 104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6	농업경영컨설팅사업

□ 사업목적

○ 민간전문가(농업경영컨설팅 전문업체)의 컨설팅을 통해 농어가의 경영능력 향상

□ 지원대상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배정된 사업비 범위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확정(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APC, RPC, 어촌계는 농식품부에서 결정 제외)

□ 사업내용

○ 경영일반, 특수한 경영문제, 양식기술 및 유통·가공분야의 전문적인 기술문제와 일상적인기술(현장애로 기술) 문제 해결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총사업비 기준 개별농어가 8백만원, 법인·업체 : 10백만원

- 공동마케팅·산지유통전문조직·APC, RPC, 어촌계 : 30백만원 이내

□ 지원조건

○ 1, 2년차는 국고보조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3년차는 국고보조 40, 지방비 10, 자부담 50%, 4년차 이후 전액 자부담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사업대상자는 시장·군수에게 사업신청 및 시·군은 시·도에 수요대상을 제출('08.11말)→시·도는 시·군의 컨설팅 수요를 농식품부에 제출('08.12말)

○ 농식품부는 시·도별 사업비를 배분('09.1)→시도는 시군별 사업비 배정→시군은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농가는 컨설팅업체를 선정('09.2)하여 사업시행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02-500-1733)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3권 105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7	농촌출신 대학생학자금 융자지원사업

□ 사업목적

○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이 보조나 융자지원하는 학자금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내용

○ 사업형태 : 출연사업

○ 융자금액 : 등록금 범위내에서 신청액 전액

○ 융자학기 수 : 재학대학 정규학기 수

○ 상환방법 : 졸업 또는 수료 1년후부터 1학기분을 1년 이내에 상환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 '09년도 지원규모

○ 융자인원(27,000명), 융자금액(900억원)

□ 지원조건 : 무이자 융자

□ 사업주관기관 : (재)한국학술진흥기관

□ 사업담당부서 :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여성과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3권 107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8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 사업목적

○ 사업목적

- 영농 및 가사도우미 지원으로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과 취약농가 기초생활 유지 도모

□ 지원대상

○ 영농도우미 : 2주 이상 상해진단 또는 입원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70세 이하(신청일 현재를 기준)의 농업인과 그 배우자

○ 가사도우미 : 농촌에 거주하는 65세이상 단독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손가구, 장애인가구로 가사활동이 곤란한 가구

*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수혜자, 노인돌보미서비스 수혜자, 가사간병도우미 및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수혜자 등 중앙정부나 지자체로 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내용

○ 사업형태 : 보조사업(국고 70%, 이용농가 및 농협부담 30%)

○ 지원금액 : 영농도우미(52,000원/일), 가사도우미(10,000원/회)

○ 지원일수 : 영농도우미는 연간 10일, 가사도우미는 연간 10회 이내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09년도 지원규모

○ 영농도우미(13천가구, 47억원), 가사도우미(18천가구, 13억원)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 사업담당부서 :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여성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3권 109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9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 사업목적

○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전업농중심의 영농규모 확대 촉진

□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연　　령 : 65세 이상 74세 이하(1935.1.1～1944.12.31일 출생자)
- 영농경력 : 신청일 직전 10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 대상농지 :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밭・과수원(간척농지,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는 진흥지역 밖 포함)

□ 사업내용

○ 3년이상 소유한 논・밭・과수원을 한국농촌공사에 매도, 임대 또는 임대위탁하거나, 60세이하의 전업농업인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수령 후 농업경영 금지(단, 3,000㎡이하는 경작 가능)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국고보조 100% (사업량 10,000ha, 사업비 84,497백만원)

□ 지급조건

○ 지급단가 : ㎡당 연 300원(ha당 3,000천원/연)

○ 지급기간 : 75세까지 지급(최고 10년 이내)

○ 지급한도 : 20,000㎡까지 지급(동일인이 매도 및 임대 할 경우 각각 적용)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촌공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02-500-1762)

○ 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사업처 직불사업팀 (031-420-4140)

□ 신청기관 : 신청인 거주지 관할 한국농촌공사 지사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3권 110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 사업목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제고

□ 지원대상

○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농가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단, 버섯재배의 경우 원목재배형태는 지급대상에 포함)

□ 사업내용

○ 지급 기간 : 3년(회)

○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 : 0.1 ~ 5.0ha

○ 지급단가

- 논 : 유기 392천원/ha, 무농약 307, 저농약 217
- 밭 : 유기 794천원/ha 무농약 674, 저농약 524

○ 논·밭구분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국고보조 100%

□ 지원규모 : ('09예산) 42,309백만원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등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팀(전화 : 02-500-1960)

○ 시·도 농산 또는 친환경농업 담당과, 시·군 등의 농업담당부서

□ 신청기관 : '09. 3. 1~3. 31,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3권 111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1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 사업목적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경지율 22% 이하, **경지경사도 14%** 이상인 농지가 50% 이상인 읍·면 지역 법정리(도서는 읍·면지역 모든 법정리)에 실거주하며, 동 지역의 농지 및 초지를 실경작(관리)하는 농업인

* 쌀소득직불금 지원대상이 되고 있는 농지, 농지법상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가 불가한 농지('96년 이후 취득농지 등)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내용

○ 지원형태(보조) : 직접지불금 및 지자체 행정비(국고 70%, 지방비 30%), 한국농촌공사 전산관리·이행점검시스템 관리비(국고 100%)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사업량 118천ha, 사업비 33,582백만원(국고 33,582, 지방비 13,994)

□ 지원조건

○ 농지관리의무, 마을공동기금 조성, 마을활성화 실천(1개 이상) 등 직접지불금(보조금) 지급요건 이행

□ 사업주관기관 : 시·군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 신청기관 : 시·군(읍·면)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3권 113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2	경관보전직접지불제

□ 사업목적

○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 및 마을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 지역사회의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마을단위 경관보전계획을 세우고 시장·군수와 협약을 통해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게 보조금 지급

- 경관작물 : 초화류로서 경관형성이 주목적이고 효과가 우수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작물 (목본류는 제외)
- 최소면적규모 : 필지당 0.5ha이상, 마을단위 2ha이상 협약시 가능

○ 경관작물 재배와 마을경관보전활동비를 별도로 각각 지원

- 지원조건 : 국고 70%, 지방비 30%
- 경관작물재배 : 동계작물 100만원/ha, 하계작물 170만원/ha(농가지급)

* 단, 해당품목에 정부수매, 종자대지원 등 품목특정적인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 중복지원 금지(지자체 보조 포함)

- 마을경관보전활동비 : 협약면적에 비례하여 30만원/ha(마을위원회 지급)

□ 사업내용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구성 및 마을단위 협약체결을 통해 경관작물 재배관리 및 마을주변 경관보전활동 추진

* 경관작물 재배 및 안길, 진입로, 마을공터 등 경관보전활동 추진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지구청장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산업과(02-500-1823)

□ 신청기관 : 읍·면·동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3권 115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3	농업인재해공제사업

□ 사업목적

○ 농업인의 농업관련 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종합적으로 보호, 육성

○ 농작업중 발생되는 농기계의 각종사고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재산적 피해에 대한 신속한 재생산 여건 조성

□ 지원대상

○ 농업인안전공제

– 농업인 안전공제Ⅱ :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

– 임업인안전공제 : 영림활동에 종사하는 임업인

○ 농기계종합공제 : 공제대상 농기계(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 광영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종사자중 농기계운전이 가능한 자(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 포함)

○ 상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농업을 하고 있는 자는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내용

○ 농업인재해공제 보험료의 50% 보조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공제료의 50% 국고보조, 50% 자부담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농협중앙회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과, 농협중앙회 농업정책보험부

□ 신청기관 :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3권 117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4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의료이용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및 준농어촌 농어업인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일부 경감하여 농어업인 세대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 지원대상

○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농어업인 세대

□ 사업내용

○ 농어촌 및 준농어촌 농어업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28%지원

○ 지원형태(보조), 자금 사용 용도(보험료)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사업세계정)

□ 자금유형

○ 사업량 : 500만 세대

○ 사업비(국고보조) : 170,704백만원

□ 지원조건

○ 사업비(보조) : 170,704백만원

○ 지원조건 :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거주자이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농어업인 세대

□ 사업주관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업담당부서 : 농촌사회여성팀(02-500-1929)

□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3권 118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5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 사업목적

○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및 농어업인 노후소득 보장

□ 지원대상

○ 국민연금보험 지역가입자중 소득이 있는 농어업인

* 지원제외자 : ①농어업인이되 농어업소득보다 농어업외 소득이 많은 자, ② 농어업인이 되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하여 사업하는 자(단, 농어업 관련 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는 제외)

□ 사업내용

○ 농어업인에게 연금보험료를 최대 50% 지원

○ 지원형태(보조), 자금 사용 용도(보험료)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사업세계정)

□ 자금유형

○ 사업량 : 253만 세대

○ 사업비(국고보조) : 91,665백만원

□ 지원조건

○ 기준소득금액('09 : 월730천원)을 지원기준으로

- 지원기준 이하 : 보험료의 50% 정률지원
- 지원기준 초과 : 지원기준(월 730천원)의 지원금액(월 32,850원)을 정액지원

□ 사업주관기관 : 국민연금공단

□ 사업담당부서 : 농촌사회여성팀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3권 119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6-①	농어촌관광휴양단지

□ **사업목적**

○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농림어업전시관, 학습관,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도시민 등에게 체험·휴양 공간으로 제공 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소득증대에 기여

□ **사업대상자** : 제한없음

□ **사업규모** : 3만㎡ ~ 100만㎡미만

□ **사업내용**

○ 기본시설 : 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 농림어업전시관(60㎡이상), 학습관(60㎡이상)

○ 자율시설 :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2항 규정에 의한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기타시설 등으로 사업자가 설치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

○ 개발방법 :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문화 등과 연계·조화되도록 개발

□ **자금지원(융자)** : 없음

□ **사업주관기관** : 시·군

□ **사업담당부서** : 농식품부 도농교류과(☎ : 02-500-1794)

□ **신청기관** : 시·군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3권 120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6-②	관광농원

□ 사업목적

○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생산기반을 활용한 영농체험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도시민 등에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방문객에게는 농업·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림어업인 등에게는 소득증대의 기회를 부여

□ 사업대상자

○ 농림어업인, 한국농촌공사,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 사업규모 : 100,000㎡미만

□ 사업내용

○ 기본시설 : 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 영농체험시설(농장면적) : 작목입식면적 등이 2,000㎡이상으로서 농원 면적의 20%이상 조성

○ 자율시설 :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한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음식제공시설, 기타 시설등으로 사업자가 설치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시설로서 경영안정화를 위해 시설설치는 적정규모로 설치

□ 재원 : 농업종합자금(융자)

□ 자금지원 및 사용용도

○ 농업종합자금으로 시설설치, 개보수 및 관광농원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을 지원 (단, 관광농원사업 외 별도 직업보유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 융자(농업종합자금)조건 : (시설자금) 연리 3%, 5년거치 10년상환, (개보수자금) 3%, 2년거치 3년상환, (운영자금) 3%, 2년이내 상환

○ 융자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외 사용은 일체 불허

* 기타 융자에 관한 사항은 농협중앙회 여신관리규정 준용

□ **사업주관기관** : 시·군

□ **사업담당부서** : 농식품부 도농교류과(☎ : 02-500-1794)

□ **신청기관** : 시·군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3권 122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6-③	농어촌 민박사업

□ 사업목적

○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일부를 농어촌을 방문한 이용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용객에게는 농업·농촌의 정취를 느끼게 하고 농어촌지역 주민에게는 소득증대의 기회를 부여

□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

□ 자금지원 및 사용용도

○ 자금지원(융자)

-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 증·개축 비용을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단, 농어촌민박사업외 별도 직업보유자는 대출 제외)
- 융자(농업종합자금)조건 : (개보수) 3%, 2년거치 3년상환, (운영자금) 3%, 2년이내 상환

○ 사용용도

- 융자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외 사용 금지

□ 재원 : 농업종합자금(융자)

□ 사업주관기관 : 시·군

□ 사업담당부서 : 농식품부 도농교류과(☎ : 02-500-1794)

□ 신청기관 : 시·군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3권 124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7	한계농지정비사업

□ 사업목적

○ 영농조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주택・스포츠・문화・복지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 시행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77조 내지 제86조

□ 사업시행 및 절차

○ 한계농지 정비지구가 아닌 한계농지를 정비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고, 시장・군수는 정비지구로 지정・고시

* 한계농지 정의 :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경사도 15%이상, 집단화 규모 2ha 미만

* 정비**지구지정 요건** :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의 토지를 포함한 면적이 20ha 이하이며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가 아닌 지역(단, 한계농지는 15% 이상, 농지면적은 20% 미만)

○ 한계농지 정비지구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은 시장・군수 또는 정비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시행

□ 사업내용

○ 과수・원예・특용작물・축산단지・양식장 등 농림수산업을 위한 농지의 조성 및 시설의 설치, 농어촌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등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 개발 및 주택・택지, 공업시설, 체육시설, 의료・교육・연수시설 등

□ 추진절차

○ 한계농지 조사・고시 →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고시 → 사업계획수립 → 사업계획승인 → 사업시행 → 준공검사 → 시설이용 ・관리

□ 사업주관기관 : 지자체(시장・군수)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3권 124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8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 사업목적

○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건실한 “농업인”육성

□ 지원신청대상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가축질병 또는 농수산물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 영농규모가 준전업농 규모 이상이거나 농업용 부채 2,500만원 이상인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영농규모가 준전업농의 1/2이상이거나 농업용 부채 1,200만원 이상인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과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 협동조합 상임 임직원 및 안정적인 직업 보유자, 비농업용 부동산 보유자 지원제외

□ 사업내용

○ 대출취급기관 경영평가단의 사전평가, 경영평가위원회의 회생가능 여부에 따라 자금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확정

○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유형별로 자금을 지원

- 회생가능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회생불능 :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자금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

＊ 다만, 순수연체이자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동 금액면제 결정

□ **재 원 :** 농·축·인삼협·산림조합의 중앙회 자금 또는 상호금융자금

□ **자금유형**

○ 경영회생자금 :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융자액 전액을 지원하되, 융자 90%, 자부담 10%이상을 부담하는 농업인 우선지원

○ 인수자금 : 인수채무를 제외한 순수 시설인수에 소요되는 자금은 자부담 비율을 30% 이상으로 함

□ **지원조건**

○ 연리 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사업주관기관 :** 농식품부 농업금융과(02-500-1759)

□ **사업담당부서 :**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02-2080-6783)

□ **신청기관 :** 거래조합 및 시군지부(대출취급기관)에 지원신청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3권 126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9	농축산경영자금지원

□ 사업목적

○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을 원활하게 하고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지원대상

○ 경종농업, 과수, 버섯, 원예 등 특작농가 및 부업규모의 축산농가

- 법인은 재해대책자금을 제외한 신규대출 지원 배제

○ 대출제한대상

- 농협임직원(배우자포함),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업소유자 및 농외소득 3천만원 초과 자영업자

□ 사업내용

○ 융자사업으로 종자, 비료, 사료, 노임 등 농축산경영비

□ **재원** : 공공자금관리기금 및 농협자금

□ **자금유형** : 3조원(전액 융자)

□ **지원조건** : 농가당 1천만원(연리 3.0%, 1년이내 상환)

□ **사업주관기관** : 농협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과

□ **신청기관** : 마을별 영농회 또는 지역 농·축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3권 127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0	농어촌주택개량사업

□ 사업목적

○ 농어촌의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개량사업을 지원하여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정주의욕을 고취하고 농어민의 주거수준 향상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서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과 농촌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중 시장·군수가 추천한 자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융자

○ 지원내용 :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지원

○ '09년 사업계획 : 6,000동, 240,000백만원

□ 재 원 : 농특, 국민주택기금, 지방비, 농협자금 등

□ 지원조건

○ 지원조건 : 3%,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 신(개)축 세대당 40백만원, 부분개량·증축 세대당 20백만원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지역개발과

□ 신청기관 : 시·군·구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3권 128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 **사업목적**

○ 도시의 30~40대 젊은 인력을 농어촌으로 유치하여 농어업의 핵심주체로 육성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 및 살 맛 나는 농어촌 조성

- 단지 입지는 지역 내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이 자율 선정
- 사업계획에 따라 영농어지원, 교육·복지환경조성 등은 기존사업으로 연계
-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모델 창출 후 본격 확대 추진

□ **지원대상**

○ 시장·군수('09년도 시범사업 5개지구)

□ **사업내용**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기반시설 조성・주택건축비 보조 및 융자지원)

○ 입주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영농어 기술지원 및 자금지원, 양질의 교육·복지 환경 조성 등을 연계, 종합 지원(기존사업비에서 지원)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09예산 : 2,979백만원(국고 2,085, 지방비 894)

- 시범사업 5개소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비

□ **지원조건**

○ 기반시설 조성비 : 국고 70%, 지방비 30%

○ 임대주택 건축비 : 보조 40%, 융자 60%(연리 3%, 10년거치 20년상환)

○ 분양주택 건축비 : 융자 100%(연리 3%, 3년 단기상환)

□ **사업주관기관** : 시·군('09년도 시범사업 5개지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지역개발과

□ **신청기관** : 시·군('09년도 시범사업 5개지구)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3권 129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2	산림경영계획

□ 사업목적

○ 민유림의 조림·육림·벌채·임도시설 등 산림자원의 조성·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인 산림경영계획의 작성을 지원함으로써 산림자원 관리의 합리성 제고 및 산림경영계획 작성면적 확대

□ 지원대상

○ 2010년도에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인가 받고자 하는 산주

□ 사업내용

○ 산림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계획경영을 하고 산림이 가지는 공익적·경제적 가치가 유지·증진되도록 하기 위함

○ 산주에게 조림·육림·벌채·임도시설 등의 산림사업에 대한 10년 단위의 종합계획인 산림경영계획의 작성을 권장하고 작성비용을 지원함

□ 재　　원 : 일반회계 국고 및 지방비 예산

□ 자금유형

○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받은 산림에 대하여 경영계획 작성 비용(10,800원/ha)을 보조지원

□ 지원조건

○ 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단가 : 10,800원/ha('10년도예산 확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 주관기관 : 지방자치단체(시·군)

□ 사업 담당부서

○ 지자체 : 시·군 산림부서

○ 산림청 : 산림경영지원과 (042-481-4195)

□ 신청기관

○ 지자체(시·군 산림부서)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3권 131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3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 사업목적

○ 임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지원하여 임업인의 자금난 해소 및 임가 소득·증대에 기여

□ 지원대상

○ 임업인, 작목반, 법인경영체, 목재수출업체, 산림조합 또는 임산물생산단체 등

□ 사업내용

○ 숲가꾸기, 임도시설, 전문임업인육성, 해외산림투자, 사립수목원조성, 사립자연휴양림조성, 산림조합육성, 산양삼(장뇌삼)생산, 단기산림소득, 조림용묘목생산, 목가공시설, 보드류시설, 국산원자재구입, 폐목재구입, 유통센타원료구입, 수출원자재구매, 임업기계화 등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2009년 사업비 : 39,300백만원

- 국고융자 34,300백만원, 이차보전 5,000백만원(융자규모 40,000백만원)

□ 지원조건(※세부사업별 융자기간 등 지원조건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참조)

○ 1.5% : 조림, 숲가꾸기,임도시설, 임야매입, 해외산림투자

○ 3% : 전문임업인육성(자연휴양림, 기타 임업경영자금), 사립수목원조성, 사립자연휴양림조성, 산림조합육성, 산양삼(장뇌삼)생산, 단기산림소득지원, 조림용묘목생산, 유통센타원료구입, 임업기계화

○ 3~4% : 목가공시설, 국산원자재구입, 폐목재구입(임업인 3%, 비임업인 4%)

○ 4% : 보드류시설, 수출원자재구매, 임업기계장비 생산

□ **사업주관기관 :** 시·군(보조수반 융자사업), 산림조합(순수융자사업), 산림청(해외산림투자)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자원국 산림경영지원과(042-481-4177, 4194)

○ 지자체 : 산림관련부서

○ 산림조합중앙회 : 신용사업부(02-3434-7221～3), 지역 산림조합

□ **신청기관 :** 시·군(보조수반 융자사업), 산림조합(순수융자사업), 산림청(해외산림투자)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3권 132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4 산림소득증대사업

□ 사업목적
○ 임산물의 생산·시설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전업 임업인을 육성
○ 생산기반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 지원대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산물소득원 지원대상 품목
○ 지원대상자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 사업내용
○ 표고, 밤, 대추, 관상수 등의 생산기반 조성사업
○ 산양삼 생산이력제, 산림복합경영,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등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	65,551	23,109	14,805	-	27,637
표고재배시설	82개소	5,707	1,427	1,427	(이차보전)	2,854
톱밥표고배지시설	3개소	2,400	600	600	(이차보전)	1,200
밤나무노령목관리	1,500ha	1,553	388	388	(이차보전)	777
밤 방제장비지원	22대	211	53	53	(이차보전)	105
밤 작업로	1,000km	4,000	1,000	1,000	(이차보전)	2,000
밤나무 토양개량	5,000ha	1,611	1,128	322	-	161
밤 대체작목 조성	1,000ha	7,000	2,800	1,400	-	2,800
친환경 밤생산	1,000ha	8,000	2,000	2,000	(이차보전)	4,000
대추생산기반조성	40개소	1,280	320	320	(이차보전)	640
밤·잣 생산장비	10개소	1,824	456	456	(이차보전)	912
산양삼 생산이력제	8개소	800	400	400	-	-
관상수 및 묘포지 토양개량	300ha	2,035	1,425	407	-	204
조경수 관정시설	30대	640	240	160	(이차보전)	240
산림복합경영	40개소	3,488	872	872	(이차보전)	1,744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15개소	25,000	10,000	5,000	-	10,000

□ 지원조건

사 업 명	금리	보 조 율(%)				융자한도	융자기간 (거치/상환)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표고재배시설	3.0%	20	20	20	40	50백만원	3/7
톱밥표고배지시설	〃	20	20	20	40	200백만원	〃
밤나무노령목관리	〃	20	20	20	40	사업비의 20%이내	〃
밤 방제장비지원	〃	20	20	20	40	6백만원	〃
밤 작업로	〃	20	20	20	40	사업비의 20%이내	5/5
밤나무 토양개량	-	70	20	-	10	-	-
밤 대체작목 조성	-	40	20	-	40	-	-
친환경 밤생산	3.0%	20	20	20	40	사업비의 20%이내	3/7
대추생산기반조성	〃	20	20	20	40	8백만원	〃
밤·잣 생산장비	〃	20	20	20	40	사업비의 20%이내	〃
산양삼 생산이력제	-	50	50	-	-	-	-
관상수 및 묘포지 토양개량	-	70	20	-	10	-	-
조경수 관정시설	3.0%	30	20	20	30	6백만원	3/7
산림복합경영	〃	20	20	20	40	21.8백만원	〃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	40	20	-	40	-	-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구) 산림(녹지) 부서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목재소득과(042-481-4208~9)

□ **신청기관** : 시·군·구 산림(녹지) 부서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3권 134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5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 사업목적

○ 임산물 유통단계 축소, 유통비용절감, 저장상품 품질향상, 홍수출하방지 및 출하조절, 임산물명품화 브랜드화 등으로 생산자 소득제고 및 수급안정 도모

○ 임산물 수출촉진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수출확대로 임업인 소득증대 도모

□ 지원대상

○ 임산물생산자, 생산자 단체 및 법인경영체, 임산물수출업자 등

□ 사업내용

○ 임산물 유통센터조성, 가공·유통시설, 임산물수출촉진 등 11종

□ 자금유형(2009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계		85,804	52,983	16,061	36,922	7,972	24,849
□ 농특회계		85,504	52,863	16,001	36,862	7,912	24,729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15개소	15,000	7,500	7,500	-	3,000	4,500
임산물표준출하지원	246개소	2,460	984	492	492	492	984
공동선별비지원	23,750톤	2,375	950	475	475	475	950
포장디자인개선	12개소	600	240	120	120	120	240
임산물 저장시설	50개소	12,000	6,000	3,000	3,000	3,000	6,000
임산물 건조시설	10개소	980	490	245	245	245	490
임산물가공지원	330대	1,650	660	330	330	330	660
임산물명품화브랜드화	8개소	1,252	501	501	-	250	501
임산물생산자 조직육성(농안기금)		40,250	32,200	-	32,200	-	8,050
임산물 수출 활성화		4,880	2,694	2,694	-	-	2,186
해외시장개척		812	644	644	-	-	168
□ 균특회계		300	120	60	60	60	120
임산물표준출하지원(제주특별자치도계정)	15개소	215	86	43	43	43	86
임산물저장시설(제주특별자치도계정)	2개소	85	34	17	17	17	34
임산물수출촉진(지역개발사업계정)	2종	220	220	110	-	44	66

□ **지원조건**(※ 융자조건 : 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5. 지원형태 및 의무량 참조”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 산림조합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목재소득과(042-481-4206~7), 국제산림협력과(042-481-4085~7)

○ 시・도, 시・군, 산림조합 : 산림관련부서

□ **신청기관** : 시・군・구(읍・면・동)

※ 순수 융자사업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지 관할 산림조합

□ **신청기관** : 시・군・구(읍・면・동)

※ 순수 융자사업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지 관할 산림조합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3권 136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6 산림바이오매스 사업

□ 사업목적

○ 고유가 시대를 맞아 농·산촌 주민들의 난방비를 절감시키고, 숲가꾸기 산물을 활용함으로써 산불·산사태 등 각종 재해예방 및 자원활용 촉진 도모

□ 지원대상

○ 농·산촌 및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산촌개발지역에 거주하는 농가

□ 사업내용

○ 산지에 방치된 산물을 수집하여 연료로 사용하는 화목겸용 보일러 및 펠릿보일러 보급에 소요되는 경비

- 화목겸용 보일러 (1,500천원/대), 펠릿보일러(4,333천원/대)

□ 자금유형(2009년 예산안)

(단위: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대)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합 계	5,000	13,167	3,950	3,950	-	5,267	3,950
o 화목보일러 보급	3,000	4,500	1,350	1,350	-	1,800	1,350
o 펠릿보일러 보급	2,000	8,667	2,600	2,600	-	3,467	2,600

□ 지원조건

○ 국고보조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사업주관 기관 : 시·군·자치구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이용국 목재소득과(042-481-4201~2)

○ 시·도, 시·군·구 : 산림관련부서

□ 신청기관 : 시·군·구(읍·면·동)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3권 141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7	벌채 운재로 시설 지원사업

□ 사업목적

○ 벌기령에 도달한 입목의 벌채(주벌)시 목재운송 장비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운재로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목재생산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국산목재 생산을 촉진

□ 지원대상

○ 벌채허가를 받아 소유산림을 벌채하고자 하는 산림소유자 또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 지상입목 소유자

○ 영급이 높은 임지를 우선으로 하고, 벌기령에 도달한 임지중 벌채구역 2ha이상 임지

- 벌채를 위한 수림대, 구역면적내 실제 경작농지(대, 전, 초지 등 포함)로서 산림을 볼 수 없는 지역은 면적에서 제외 조치

□ 사업내용

○ 벌기령에 도달한 주벌임지중 영급이 높은 순으로 산림소유자에게 우선지원

- {6,667ha*450천원(굴삭기 1일대여+장비운반)*50%}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사업량 : 6,667ha(보고율 : 국고보조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사업비 : 3,000백만원(국고 1,500, 지방비 600, 자부담 900)

□ 지원조건 : 지자체 보조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구) 산림(녹지) 부서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목재소득과

□ 신청기관 : 시・군・구 산림(녹지) 부서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3권 142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8	사립수목원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식물유전자원의 체계적인 보전 및 자원화·이용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국가 차원에서 생물유전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운영의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사립수목원

□ 사업내용

○ 사립수목원 지원 : 수목원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식물·장비 구입비

○ 특성사업 지원 : 전시·탐방·교육·체험시설 조성 등 보조

□ 재　　원 : 일반회계

□ 자금유형(2009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예 산 액(일반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계		1,000	500	500			500
○ 사립수목원 지원	6개소	600	300	300			300
○ 특성사업 지원	2개소	400	200	200			200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주관기관 : 사립수목원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042-481-8852, 4249)

□ 신청기관 :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3권 142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9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사업

□ 사업목적

○ 지역경제가 위축될 수 있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 대한 적절한 정부지원 추진

- 주요 단기 임산물의 생산기반 조성, 단기 고소득 품목 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백두대간 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소득증대 기회로 활용

○ 백두대간을 한반도 산림 생태축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백두대간 지역주민을 백두대간 산림보호 및 경영의 주체로 육성

□ 지원대상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군의 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에 거주하는 주민공동체·주민 또는 보호지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사업내용

○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기타 지역의 농림업소득과 관련된 사업

□ 자금유형

(단위 : 백만원)

도별	개소	사 업 비					
		합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32	8,640	6,049	6,049		2,591	
강 원	12	3,648	2,554	2,554		1,094	
충 북	6	1,296	907	907		389	
전 북	3	786	550	550		236	
전 남	1	258	181	181		77	
경 북	6	1,825	1,278	1,278		547	
경 남	4	827	579	579		248	

□ **지원조건** : 보조금 100%(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사업주관기관** : 지방자치단체(6개도, 32개시・군)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99)

○ 도, 시・군 : 산림관련부서

□ **신청기관** : 시・군(읍・면・동)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3권 143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0	조림·숲가꾸기

□ 사업목적

○ 경제적으로 가치 있고 생태적으로 건전한 산림을 조성

○ 목재의 안정적인 자급기반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지원대상

○ 당해연도 조림,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는 산주

□ 사업내용

○ 조　　림 : 경제수조림, 금강소나무후계림 조성, 산림경영모델숲조성 등

○ 숲가꾸기 :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천연림 개량 등

□ 자금유형(2009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ha)	사 업 비						
		합 계	예산액				지방비	자부담
			계	직접	보조	융자		
계	256,194	478,016	281,146	66,215	214,931	0	160,472	36,398
o 조림(농특)	21,194	114,432	72,008	11,523	60,485		36,719	5,705
o 숲가꾸기(농특)	235,000	363,584	209,138	54,692	154,446		123,753	30,693

□ 지원조건

○ 조림(보조사업)

- 경제수조림 : 사업비의 90% (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큰나무조림 : 사업비의 100% (국비 50%, 지방비 50%)
- 유휴토지조림 : 사업비의 90% (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금강소나무림 육성 : 사업비의 100% (국비 70%, 지방비 30%)
- 산림경영모델숲조성 : 사업비의 100% (국비 50%, 지방비 50%)
- 산림특화시범사업 : 사업비의 100% (국비 20%~70%)

○ 숲가꾸기 : 사업비의 90% 보조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자원육성과(042-481-4185, 4218)

○ 시・도, 시・군・구 : 산림관련부서

□ **신청기관** : 시・도, 시・군・구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3권 144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1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 사업목적

○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조사료용 기계·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도모

□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농가, 경종농가, 경종과 축산을 함께 하는 복합영농 농가(겸업농가), 한우회·낙우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한우·낙농조합 및 지역 농·축협

※ 기계·장비 보조지원의 경우 지역 조합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 한함

□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사업내용	사업대상자	지원내용	지원기준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및 유통비 지원	축산농가, 농·축협 등	• 비닐랩을 이용한 사일리지 제조비 • 장거리 운송비	보조 60%, 지방비 40% 보조 50%, 자담 50%
○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축산농가, 농·축협 등	• 조사료 생산 및 사일리지 제조 등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비	개별농가 : 융자 80%, 자담 20% 영농법인, 농·축협 : 보조 40%, 지방비 40%, 자담 20%
○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지원	축산농가, 농·축협 등	• 암모니아 처리비 및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구입비	보조 40%, 자담 60%
○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	축산농가, 농·축협 등	• 신규 초지조성 및 기존 초지 관리비용 • 목책·용수·전기·진입로 등 설치비	보조 50%, 융자 50% *초지조성단비기준 융자 80%, 자담 20%
○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	축산농가, 농·축협 등	• 옥수수·청보리 등 사료작물 종자구입비	보조 40%, 지방비 60%
○ 조사료가공시설	농·축협, 영농법인 등	• 장비 및 시설 설치비	보조30%, 지방비 30%, 자담40%

*** 암모니아 처리비는 '09년까지만 지원, '10년부터는 지원 중단계획**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조건 : (융자) 연리 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사업담당부서** : 시・도(시・군) 또는 농협중앙회(일선조합)의 축산담당부서

□ **신청기관** : 시・도(시・군) 또는 농협중앙회(일선조합)의 축산담당부서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4권 146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2	사료산업종합지원

□ 사업목적

○ 사료제조업체에 대한 시설 개보수 및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을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과 사료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

□ 지원대상

○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제조업등록업체

□ 사업내용

○ 사료제조시설자금 : BSE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사료제조라인 구분 등 시설 개보수(건물, 기계·장비 및 시설비 등)

○ 사료원료구매자금 : 단미, 보조 및 배합사료 원료 구입비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자금유형

사업비합계 (백만원)	예산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50,400	50,000	-	50,000	-	400

□ 지원조건

○ 사료제조시설자금 : 융자 70%, 자부담 30%, 3년거치 7년 상환, 연 4%(생산자단체 3%)

○ 사료원료구매자금 : 융자 100%, 2년거치 일시상환, 연 4%(생산자단체 3%)

□ 사업주관기관 : 시·도, 사료관련단체(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 (사)한국사료협회, (사)한국단미사료협회)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 자원순환팀(☎02-500-2098)

○ 시·도 : 축산담당과

○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02-2127-7386) / 한국사료협회 ☎02-581-5721~2 / 한국단미사료협회 ☎02-585-2223)

□ 신청기관 : 시·도, 사료관련단체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4권 149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3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 사업목적

○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기반조성 및 가축분뇨 지원화 촉진

□ 지원대상

○ 개별시설 : 축산농가,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 돼지 닭), 농업법인, 농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조합 등

○ 공동자원화시설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 농·축협

○ 정착촌구조개선 : 한센 정착촌의 법인체, 한빛복지협회, 지자체 등

○ 액비저장조 : 전문 유통주체, 경종농가, 축산농가,

○ 액비유통센터 : 지역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축협작목반, 민간전문 유통주체

○ 액비살포비 : 전문 유통주체

○ 액비성분분석기 : 시·군 농업기술센터

□ 사업내용

○ 개별시설 : 퇴·액비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 등

○ 공동자원화시설 : 1일 100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 정착촌구조개선 : 개별시설에 준함

○ 액비저장조 : 고정식 및 이동식 액비저장조(폭기시설 등)

○ 액비유통센터 : 액비살포에 필요한 운반차량, 살포장비 등

○ 액비살포비 : 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ha당 20만원

○ 액비성분분석기 : 액비성분분석기 구입비용 지원

□ 자금유형

세부사업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합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합 계		118,256	75,409	50,807	24,602	38,645	4,202
○개별시설	600천㎡	25,200	20,160	7,560	12,600	5,040	
○공동자원화시설	20개소	60,000	42,000	29,998	12,002	18,000	
○정착촌구조개선	48천㎡	2,016	1,411	1,411		605	
○액비저장조설치	930개소	15,810	4,743	4,743		7,905	3,162
○액비유통센터	26개소	5,200	2,080	2,080		2,080	1,040
○액비살포비	44천ha	8,830	4,415	4,415		4,415	
○액비성분분석기	50기	1,200	600	600		600	

※ '09년 균특 제주계정 1,968백만원 포함

□ 지원조건

○ 개별시설 : 보조 30%, 지방비 20%, 융자 50%

- 융자금 :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연 3%

○ 공동자원화시설 : 보조 50%, 지방비 30%, 융자 20%

- 융자금 :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연 3%

○ 정착촌구조개선 : 보조 70%, 지방비 30%

○ 액비저장조시설 : 보조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액비유통센터 : 보조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액비살포비 : 보조 50%, 지방비 50%

○ 액비성분분석기 : 보조 50%, 지방비 50%

□ 사업주관기관

○ 개별시설(개별농가)·액비저장조·액비살포비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 공동자원화시설·개별시설(법인체 등)·정착촌구조개선·액비유통센터·액비성분분석기 : 시·도지사

※ "시장 군수"에게 위임 가능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 자원순환팀(02-500-2094, 2095)

○ 시 도 : 축산담당과

○ 시 군 자치구 : 축산담당부서

□ 신청기관 : 시·군·구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4권 150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4	마필산업육성

□ 사업목적

○ 농업·농촌의 소득원으로서 말 산업의 경쟁력 강화, 우수 국내산 경주마 생산 및 생활 승마 활성화

□ 지원대상

○ 경주마(제주마 포함)·승용마 사육농가가

○ 마필관련 학교,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마필생산자협회, 지자체, 한국마사회

○ 비농업인(승마장 설 및 및 과잉마 입식에만 해당)

□ 사업내용

○ 종빈마(씨암말) 도입 자금, 마사·관리사·창고 등 사육시설 설치자금, 실내외 마장, 자동보행기, 원형마장, 약·목욕장, 주로 등 조련시설 설치 자금, 수송차량, 그레이더, 트랙터 등 장비구입 자금, 과잉마 구입 자금, 승마장·공동육성조련시설 설치 자금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자금유형 및 지원조건

○ 사업기간 : 1년(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은 1~2년)

○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 지자체 : 보조 50%, 지방비 50%
- 개인 또는 지자체외 단체 : 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종빈마 도입 : 융자 90%, 자부담 10%

○ 사육시설 등 그 밖의 사업 : 융자 70%, 자부담 30%

※ 융자금 금리는 연리 3%(비농업인 4%), 3년 거치 후 7년 균분 상환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구)

□ 사업담당부서 : 축산정책팀

□ 신청기관 : 시·도(시·군·구)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4권 152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5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 사업목적

○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유도

□ 지원대상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

□ 사업내용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에게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전금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자금유형

○ 계약암소로부터 참여기간 내에 태어난 계약생산송아지(귀표부착 완료)가 만 4개월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기(2개월)의 4~5개월령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계약당시의 안정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지급 보전금

□ 지원조건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에 가입한 농가(법인포함)

-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대상” 농가임에도 미등록한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축산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은 제외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생산자단체, 시・군(지자체)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팀

□ 신청기관 : 농협중앙회, 생산자단체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4권 153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6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

□ 사업목적

○ 송아지 생산단지 및 사육시설을 지원하여 농가에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공급토록 함으로써 품질고급화 및 송아지 생산비 절감 등을 도모

□ 지원대상

○ 브랜드경영체, 농림수산식품부 선정 농가조직체, 영농조합 등

* 농가조직체는 농식품부에서 선발된 조직체를 말함(추후 공문 통지예정)

□ 사업내용

○ 축사시설 및 내부기자재(급이·급수·소독·환기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등), 퇴비시설 및 관리사, 기반시설 조성비용 등

□ 재 원 : FTA 이행지원기금

□ 자금유형

○ '09년도 사업물량 : 5개소, 총 사업비 5,000백만원(지방비, 자담 포함)

□ 지원조건

○ 국고지원한도 : 개소당 1,200백만원(한도내 2년차 사업으로 추진 가능)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40%, 지방비 2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3.0%,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사업주관기관 : 광역시장·도지사(지자체)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팀

□ 신청기관 : 사업주관기관인 시·도(지자체)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4권 154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7	양봉산업육성사업

□ 사업목적

○ 밀원수 묘목을 보급하여 다양한 채밀활동이 가능한 양봉산업으로 육성하고, 우수꿀벌품종을 개발 보급하여 생산성 향상을 통해 소득증대 도모

□ 지원대상(사업주관기관)

○ 밀원수 묘목사업(지자체), 우수꿀벌품종보급사업(한국양봉협회)

□ 사업내용

○ 밀원수 묘목사업(묘목대 지원), 우수꿀벌품종보급사업(인건비, 조사비, 농가실험용 비용)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자금유형 및 조건

○ 밀원수 묘목사업 : 보조 80%, 지방비 20%

○ 우수꿀벌품종보급사업 : 보조 100%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팀

□ 신청기관 : 시·도지사, (사)한국양봉협회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4권 156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8	낙농체험관광사업

□ 사업목적

○ 낙농체험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낙농업에 대한 도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하는 농촌 체험현장으로 개발·운영함으로써 친환경 축산 및 낙농산업에 대한 인식 제고

□ 지원대상 : 낙농체험관광사업 참여 희망 농가

○ 목장을 경영하며 낙농체험관광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친환경 축산농가로서 '깨끗한 목장, 건강한 우유'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지닌 목장

□ 사업내용

○ 낙농체험관광목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체험시설 설치비, 환경개선비, 체험프로그램 개발비에 대하여 융자지원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자금유형

○ 융자 100% : 개소당 100백만원('09년 4개소)

□ 지원조건

○ 축발기금 융자 400백만원(무이자, 3년거치 7년 균분 상환)

□ 사업주관기관 : 낙농진흥회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 축산경영팀 낙농계(02-500-2084·2085)
○ 지자체 : 낙농업무 담당부서
○ 낙농진흥회 : 홍보팀(02-6007-5541·5546)

□ 신청기관 : 시·도(지자체)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4권 156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9	축산물도축 가공업체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축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계란집하업 등 영업자

□ 사업내용

○ 시설자금 : 위생적인 도축・가공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시설비용

○ 운영자금 : HACCP 운용비용, 일반관리비 및 원료구매자금 등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자금유형 : 145,714백만원(융자 120,000 자부담 25,714)

□ 지원조건

○ 시설자금 : 융자 70%, 자부담 30%

- 연리 3~4%(생산자 3%, 일반업체 4%)
- 도축장 시설현대화, 축산물가공업체 시설 :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도축장 시설보완, 계란가공장・집하장 및 등급시설, 유제품 개발・생산시설 :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융자 100%

- 연리 3~4%(생산자 3%, 일반업체 4%), 다만, 도축장 운영자금은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에 따라 0~3%
- 1년거치 일시상환(유업체 경영안정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사업주관기관 : 시・도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 축산물위생팀(02-500-2105~6), 축산경영팀(02-500-2082, 2084)

○ 시・도 담당과(축산과・축산경영과・축정과 등), 시・군・구 담당과

□ 신청기관 : 시・군・구 담당과

○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 유업체 경영안정자금 :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4권 157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0	브랜드육 타운 조성

□ 사업목적

○ 유통구조를 최소화하고 브랜드간 경쟁을 통한 합리적 가격 형성 유도

□ 지원대상

○ 시·도, 시·군, 농협중앙회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보조 40%, 자부담(또는 지방비) 60%

○ 자금 사용 용도

- 브랜드육 타운 시설비 : 판매장 및 음식점 시설 건축, 전기·온수 등 기반시설, 화장실, 매장별 기본 인테리어 등
- 주변 시설비 : 주차장, 환경미화시설, 위락시설(어린이 놀이터) 등 브랜드육 타운 조성에 필요한 주변시설

※ 부지매입비 및 매장내 소모성 비품 등은 제외

□ 재 원 : 자유무역협정(FTA)이행지원기금

□ 자금유형 및 지원조건

○ 사업량 : 5개소(2개년 사업으로 1년차 40%, 2년차 60% 추진)

○ 사업비 : 20,000백만원 [보조 8,000, 자부담(또는 지방비) 12,000]

※ 개소당 사업비 100억원 이내 지원(사업비가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으로 충당)

□ 사업주관기관 및 신청기관 : 농림수산식품부(축산물위생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4권 161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1	가축 및 계란수송 특장차량 지원

□ 사업목적

○ 가축 수송과정이 노출됨으로써 오는 혐오감 및 질병전파 위험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운송체계 현대화 도모

○ 가축 수송 중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여 축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서 개방화에 따른 우리축산물의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 농·축협 및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등 축산업자, 농가

□ 사업내용

○ 차량구입 및 특수장비(냉·난방시설, 급수시설 등) 설치비에 한하여 실 구입가격에 지원조건으로 지원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자금유형 : 융자 및 보조

□ 지원조건

○ 융자 50%, 자담 50%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팀

□ 신청기관 : 시·군·구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4권 161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2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 사업목적

○ 한미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과 DDA 협상 재개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 도모

□ 지원대상

○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참여농가(경영체 직영 포함), 계열화 사업 참여농가(계열주체 포함) 또는 전업농가

※ '06.1.1 이후 축산업(소 사육업, 양돈업, 양계업, 오리사육업, 낙농업)에 신규 진입한 자는 지원제외(축산업 등록제 기준). 다만, 신규진입한 자가 기존의 가축사육시설을 상속받거나, 인수한 경우 등은 그 가축사육시설의 등록면적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 사업내용

○ 한우, 돼지, 닭, 오리, 젖소 축종 축사의 신개축 및 개보수 시설

□ 2009년도 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량 (개소)	단가	사업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			지방비 (-)	자부담 (20%)
				계 (100%)	보 조 (30%)	융 자 (50%)		
계	502	-	124,424	99,539	37,327	62,212	-	24,885
1. 한(육)우	193	243	32,829	26,263	9,849	16,414	-	6,566
2. 양 돈	140	500	49,000	39,200	14,700	24,500	-	9,800
3. 양 계	72	480	24,192	19,354	7,258	12,096	-	4,838
4. 오 리	12	420	3,528	2,822	1,058	1,764	-	706
5. 낙 농	85	250	14,875	11,897	4,463	7,434	-	2,975

주) 예산액은 1년차 사업율 70% 적용

□ 지원조건

○ 보조 30%, 융자 50%(연리 3%, 5년거치 10년상환), 자담 20%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팀

□ 신청기관 : 시・도 및 시・군・구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4권 162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3-①	가축계열화사업

□ 사업목적

○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가공·유통의 일관경영으로 양축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토록 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등 안정적인 축산경영도모

□ 지원대상

○ 가축계열화 사업자(계열화 참여농가는 사업계획에 포함된 경우 지원가능)

- 가축계열화 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농림부고시 제2003-10)에 의거 계열화 사업자로 지정된 자

□ 사업내용

○ 사육시설, 가공시설, 유통시설, 사육비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자금유형 : 융자지원

□ 지원조건

○ 사육시설 : 연리 3~4%, 2~5년거치 3~10년 균분상환(융자 50%, 자담 50%)

○ 계열화사육비 : 연리 3~4%, 2년이내 상환(총 사업비의 50%이내)

○ 가공·유통시설 : 연리 3~4%,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융자 70%, 자담 30%)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팀

□ 신청기관 : 시·군·구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4권 164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3-②	브랜드 경영체지원사업

□ 사업목적

○ 브랜드 경영체의 규모화, 내실화, 차별화를 통해 브랜드 축산물 생산·유통을 선도할 핵심주체로 육성 및 브랜드 경영체의 거래교섭력 확보

□ 지원대상 (축종 : 한육우・돼지)

○ 브랜드 운영지원 : 축산물 브랜드를 추진하는 경영체
(농·축협, 영농법인 등 생산브랜드)

○ 브랜드 판매시설 : 브랜드 경영체 중 직영 판매장이나 가맹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음식점 겸업 포함)

□ 사업내용

○ 사업비 : 총 145,000백만원 [융자 114,000, 자부담 31,000]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브랜드 운영지원 : 연리 3%, 3년 거치 일시상환(인센티브 자금 : 무이자, 1년)
  : 축발기금 80%, 자부담 20% Matching Fund 구성하되, 경영체가 농가에 지원하는 생산지원자금은 자부담 면제
  ※ 영농조합법인 등 조합이외의 브랜드경영체는 기금 지원액의 125%이상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자부담한 것으로 인정
- 브랜드 판매시설 : 연리 3%, 3년 거치 7년 상환(보조 70%, 자부담 30%)

○ 자금 사용 용도

- 브랜드 운영지원 : 생산지원자금 및 브랜드 운영자금
- 브랜드 판매시설 : 식육판매점포(겸업 음식점 포함) 건축·매입·임차, 판매 진열장, 포장, 인테리어시설, 운송차량 등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사업주관기관 및 신청기관 : 시·도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축산물위생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4권 165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3-③	축산물브랜드 컨설팅지원사업

□ 사업목적

○ 브랜드 경영체의 경영, 재무, 마케팅 등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체의 경영마인드 향상 및 브랜드 내실화

□ 지원대상

○ 브랜드사업(산지축산물 생산유통지원사업) 선정 경영체 및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 경영체

- 브랜드경진대회 수상경영체 및 우수브랜드인증 경영체에 우선 지원

□ 사업내용

○ 자금 사용 용도 : 브랜드 컨설팅업체와 계약을 통해 브랜드 경영체가 추진하는 컨설팅 비용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자금유형 및 지원조건

○ 사업량 : 5개소

○ 개소당 사업비 1억원 이내 지원(사업비가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으로 충당)

○ 지원비율 : 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사업주관기관 및 신청기관 : 시·도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축산물위생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4권 168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4	축산종합지도(HACCP)지원사업

□ 사업목적

○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영업자 등에게 전문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HACCP 조기정착 유도

□ 지원대상

○ 축산농가(소・돼지・닭), 축산물영업자(식육판매업・보관업・운반업・집유업)

- 타 농림수산사업(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에서 HACCP 지정을 조건으로 사업대상에 선정된 농업인・영업자 제외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정액 보조

○ 자금용도 : 축산농가・축산물작업장 HACCP 컨설팅 비용 지원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조건

○ 전국 320개소에 개소당 8백만원(국비보조 3백만원, 지방비 2백만원, 자부담 3백만원)

□ 사업주관기관(담당부서) : 시·도(축산담당부서)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4권 169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5	축산공제 사업

□ 사업목적

○ 자연재해(풍수해, 설해 등),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시 공제 및 보험제도를 이용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회생 및 소득보장

□ 지원대상

○ 가축공제 사업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법인

- 축산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등록 대상 농가 중 미등록 농가는 공제료 정부지원 제외
- 축사특약은 적법한 건물(시설포함)에 한하여 정부지원. 다만, 가축은 사육시설(건물)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소방방재청에서 실시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는 가축공제 축사특약에 대한 정부의 공제료 지원 제외

□ 사업내용

○ 가축공제 및 가축보험에 농업인이 납입하는 공제료의 50% 보조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자금유형**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조건** : 가축 공제료 및 보험료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LIG 컨소시엄

□ **사업담당부서** : 농업정책국 농업금융과

□ **신청기관** : 농협중앙회, LIG 컨소시엄]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4권 170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6	품질고급화 장려금

□ 사업목적

○ FTA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쇠고기·돼지고기의 품질고급화 촉진

□ 지원대상

○ 일정 이상의 등급을 받은 한·육우의 거세우 및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생산농가 및 법인

- 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 상법상 법인으로 등록한 기업에서 운영하는 목장, 농협중앙회, 수입하여 사육한 가축은 대상에서 제외
- 돈열항체 양성율이 80%미만인 농가 및 법인은 제외

□ 사업내용

○ 거세한 한우와 육우, 돼지를 출하하여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장려금 지급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조건

○ **한우**

- 거세우중 육질 1^{++}등급 판정을 받은 생산자에게 장려금 200천원/두
- 거세우중 육질 1^{+}등급 판정을 받은 생산자에게 장려금 100천원/두

○ **육우**

- 거세우중 육질 1^{+}이상등급 판정을 받은 생산자에게 장려금 200천원/두
- 거세우중 육질 1등급 판정을 받은 생산자에게 장려금 100천원/두

○ **돼지 육질 1^{+}등급 판정을 받은 생산자에게 장려금 10천원/두**

□ 사업주관기관 : 축산물등급판정소, 농협중앙회, 생산자단체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팀

□ 신청기관 : 축산물등급판정소, 농협중앙회, 생산자단체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4권 171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7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 사업목적

○ 정부 주도의 수산자원관리 한계에서 벗어나 자원이용 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서 지속가능한 어업자원관리 체계를 구축

□ 지원대상

○ 2009년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140개 우수공동체

□ 사업내용

○ 자율관리 우수공동체의 소득증대를 위해 다수어업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사업

* 세부사업내용은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집행 및 사후관리지침 제6조 내지 제9조” 참조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지자체보조(사업비 : 14,300백만원)

□ 지원조건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2008년도 등급, 구성원수, 기존·신규공동체 유무에 따라 차등 지원(개소당 0.5~3억원)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장・군수・자치구청장)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회복과(02-500-2393~2394)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4권 173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8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

□ 사업목적

○ 개발압력이 거센 수산자원 보호구역(해면 및 인접육역)에 대한 해당지자체의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수산자원 보호 및 육성에 대한 위해행위로부터의 보호

□ 지원대상

○ 수산자원 보호구역 관리청인 시·군에서 사업집행

□ 사업내용

○ 연안 수산보호구역에 대한 행위위반 사항 조사 및 안내 표지판 설치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총사업비 : 200백만원('09예산/국고100백만원)(국고50%, 지방비 50%)

○ 연안 수산보호구역에 대한 연 1회이상 이용실태 조사 및 안내표지 설치(20개)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신식품부: 양식산업과(02-500-2377)

○ 지자체 : 경남, 충남, 전남 수산 및 어업담당부서

□ 신청기관

○ 경남, 충남, 전남 지역 시군 어업 및 수산 담당부서에 신청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4권 174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9	소규모바다목장 사업

□ 사업목적

○ 해역별 특성에 맞는 소규모 바다목장을 조성하고 어장관리를 통한 수산물의 안정생산체제구축

○ 시범 바다목장 연구용역 사업에서 축적된 기술과 전문성 등을 활용하여 시·도 자체적으로 개발 잠재력이 우수한 해역을 선정, 단기간에 걸쳐 과학적, 체계적으로 조성하여 연안해역 수산자원조성 효과 극대화

□ 지원대상

○ 시·도(시·군·구) : 소규모바다목장화사업 기본계획 연구용역 수행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12개소(강릉, 고군산, 거제, 제주 성산, 보령, 군산 직도, 사천, 연평, 속초, 기장, 신안, 제주 강정)

○ 사용용도 : 인공어초 투입, 해중림 조성, 수산종묘방류에 소요되는 비용

□ 재 원 : 일반회계

□ 자금유형

○ 지원형태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시·도비 25%, 시·군 25%)

○ 사업비 : 5년간 1개소당 50억원(국비 25억, 지방비 25억)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회복과

□ 신청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회복과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4권 174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0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

□ 사업목적

○ 수산물의 우수성 등에 대한 홍보사업 추진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해 수산물의 판매 확대 및 어업인의 소득향상

□ 지원대상

○ 수산물 생산자 단체 및 업체, 수산관련 단체 등

- 다만, 전자상거래 활성화사업의 경우 한국수산회 및 수협중앙회

□ 사업내용

○ 수산물 소비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 홍보·품목·행사 등 사업추진에 따른 경비 지원

○ 수산물 전자상거래 시스템 운영에 따른 경비 지원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민간단체 경상 보조

□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 다만, 필요시 사업비 일부 부담

□ **사업주관기관** : 수산관련 업·단체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02-500-2316)

□ **신청기관** : 사업담당부서에 직접 신청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4권 175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1	환경친화형 양어용 배합사료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사업목적 : 생사료 사용으로 야기되는 연안어류 양식어장의 환경악화 및 자원남획을 방지

○ 시책 및 추진방향 : 연안 해면양식어장의 배합사료 사용율 제고

□ 지원대상

○ 양식장별 대상어종

- 가두리양식장(축제식 포함) : 조피볼락, 돔류, 농어류, 기타어종
- 수조식양식장 : 넙치, 강도다리, 기타어종

□ 사업내용

○ 배합사료를 3개월이상 100% 사용을 희망하는 양식어가에 대해 지원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자금유형

○ 배합사료를 구입, 사용한 총금액의 30% 지원

□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민간경상보조)

□ 사업주관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 신청기관 : 양식어업인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4권 176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2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공급

□ 사업목적

○ 사업목적 : 백신공급으로 질병방지 및 우량한 수산물 생산

○ 시책 및 추진방향 : 산업화되어 생산된 단일질병 백신제품을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혼합 질병예방 복합백신 공급

□ 지원대상

○ 수산업법에 제8조와 제41조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양식어업을 하고 있는 어업인 및 단체(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사전 질병예방 백신공급으로 질병피해 최소화

○ 대상백신 : 에드와드 백신, 연쇄구균 백신, 혼합백신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자금유형

○ 사업비 : 2,315백만원(보조 926, 지방비 926, 자부담 463)

□ 지원조건

○ 지원형태(보조) : 국고보조 40%, 지방비 40%, 자담 20%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02-500-2378)

□ 신청기관 : 양식어업인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4권 177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3	고밀도부표보급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사업목적 : 양식시설 등에 사용되는 고밀도부표를 보급함으로써 연안어장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어업경영을 지원

○ 시책 및 추진방향 : 환경친화적 고밀도부표 보급으로 연안어장 환경오염을 예방

□ 지원대상

○ 양식장별 대상어종

○ 대상자

- 양식어업, 어장시설 등 과정에 새로 설치하는 어장부표의 규격을 어장관리법 관련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시설하는 자

□ 사업내용

○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정한 규격제품 부표를 새로 구입하여 사용을 희망하는 어업인에 대해 지원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규격부표를 새로 구입 사용한 어업인에서 총금액의 20%를 국고 지원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자담 60%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구)

□ 사업담당부서 : 해양수산 사업부서

□ 신청기관 : 시・군・구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4권 178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4	양식장 HACCP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국제적 위생관리기준인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를 양식장에 적용토록 지원하여 양식수산물의 신뢰도 확보

□ 지원대상

○ 넙치, 뱀장어, 송어 양식장 등

□ 사업내용

○ HACCP 적용 컨설팅 및 시설개선비 보조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사업량(양식장 40개소), 사업비(750백만원)

□ 지원조건

○ 컨설팅비 : 국고보조 50%, 지방비 20%, 자부담 30%(개소당 사업비 12백만원)

○ 시설개선비 : 국고보조 50%, 지방비 30%, 자부담 20%(개소당 사업비 23.5백만원. 다만, 개소당 국고지원액은 11.7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주관기관 : 시・도

□ 사업담당부서 : 농식품부 유어내수면과(02-500-2404~2405)

□ 신청기관 : 시・도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4권 178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5	수산시장시설개선사업

□ 사업목적

○ 수산시장 시설개선을 통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의 이익증진과 수산물 위생처리 및 수산물 판로 기반 확보

□ 지원대상

○ 수산부류 도매시장 개설자인 지자체 및 제5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고시한 산지위판장, 공판장 운영자인 수협

□ 사업내용

○ 수산시장 바닥, 지붕, 비가림, 방풍, 폐수처리, 냉동시설, 수산물가공 작업장, 주차장, 경매장, 판매장 등에 대한 시설개선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자치단체자본보조

□ 지원조건

○ 수산부류 도매시장 시설개선 : 보조 70%, 지방비 및 자담 30%
○ 산지 위판장 시설개선 : 보조 40%, 지방비 30%, 자담 30%
○ 유통센터 및 공판장 시설개선 : 보조 50%, 지방비 및 자담 50%

□ 사업주관기관 : 시·도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 수산정책과(02-500-2356~7)
○ 시·군(시·도) : 도매시장, 위판장 등 관련부서
○ 수협 : 위판장 등 관련부서

□ 신청기관 : 시·군(시·도) 도매시장, 위판장 등 관련부서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4권 180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6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 사업목적

○ 유가상승으로 어업생산활동 위축에 따른 고효율 에너지·연료절감형 장비 지원으로 어업생산활동 활성화

□ 지원대상

○ 집어등이 필요한 오징어·갈치채낚기 어선 등에 에너지 절감형 집어등 설치를 희망하는 어업인

○ 연근해 및 원양어선으로 유류절감장치 설치를 희망하는 어업인

□ 사업내용

○ 연료소모량이 적은 에너지 절감형 집어등 및 유류절감장치 지원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보조 30%, 지방비 30%, 자담 40%

□ 지원조건

○ 지원규모 : 5,502백만원(617척)

- 집어등 설치 1,302백만원(217척)/유류절감장치 설치 : 4,200백만원(400척)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사업담당부서 : 관할 시·도, 시·군·구 수산관련과

□ 신청기관 : 관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4권 181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7	어선기관 및 장비개량

□ 사업목적

○ 저효율·노후기관을 새로운 선박용기관으로 대체하고 어선의 장비·설비 등을 현대화하여 해양사고예방 및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 지원대상

○ 연근해 어업허가(면허)가 있는 어선으로서 기관(선외기 포함)을 설치하거나 장비·설비를 개량하고자 하는 어업인

□ 사업내용

○ 저효율·노후 어선기관 대체 및 장비개량 자금 융자 지원

□ 재 원 : 수산발전기금

□ 자금유형

○ 융자 80%, 자담 20%

□ 지원조건

○ 지원규모 : 600백만원

○ 지원조건 : 금리 연 3%, 1년 거치 4년 상환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사업담당부서 : 관할 시·도, 시·군·구 수산관련과

□ 신청기관 : 관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4권 182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8	양식장비 임대사업

□ 사업목적

○ 사용빈도가 낮은 필수 고가장비 구입이 어려운 어가 중심으로 양식장비를 임대하여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장비 구입에 따른 어업인의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개별어가, 지역수협, 영어조합법인 및 어촌계 등 어촌공동이용조직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지자체자본보조

○ 자금 사용용도

- 임대 양식장비 구입비
- 임대장비 보관창고 리모델링비
- 임대장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
- 일용직 인건비, 수리비, 부품구입비 및 일반관리비 등 운영비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사업량 : 2개소(사업단가 : 1,500백만원/개소)

□ 지원조건

○ 사업비 : 3,000백만원(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 : 어선인력과

□ 신청기관 : 시·도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4권 183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9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 사업목적

○ 교통여건이 열악한 어촌지역에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점검반을 운영함으로써 고가장비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조업여건 조성

□ 지원대상

○ 어업용기자재 이동점검·수리업체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자금 사용용도

- 정기점검과 현장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수리에 필요한 인건비 및 관리비용
- 소규모(최고 3만원 이내) 부품 무상교체비용

＊3만 원 이상의 부품 교체인 경우 3만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수요자가 부담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사업량 : 30개소(사업단가 : 27백만원/개소)

□ 지원조건

○ 사업비 : 810백만원(국고 100%, 민간경상보조)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 : 어선인력과

□ 신청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4권 184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0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 사업목적

○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지도하고 사업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경영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 수산 전문인력 양성

□ 지원대상

○ 2009년도 이전 선정자 중 융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 지원대기자 및 2009년 이후 신규로 신청한 자 중 국립수산과학원 전문심사위원회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발·확정한 자

□ 사업내용

*** 기 선정한 융자금 지원대기자가 있는 경우, 최우선적으로 지원**

○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지원사업

- 어선어업 : 어선건조 및 구입, 어선개량 및 보수, 어구 및 장비 구입
- 증·양식업 : 양식장 신축 및 시설개보수, 어장구입, 양식기자재·어장관리선 구입 등
- 수산물 가공 : 수산물 저장 및 가공시설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사업비 20,000백만원(국비 30%, 금융기관자금 70%), 전액 융자

* 선도우수경영인은 우수농어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비로 지원(금융자금 100%)

□ 지원조건

○ 금리 및 융자기간 : 연리 3%,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15년)

○ 지원한도(백만원) : 어업인후계자(40), 전업경영인(50), 선도우수경영인(100)

□ 신청및주관기관 : 국립수산과학원장(수산관리과·소장), 제주도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인력과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4권 185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1	수산업인턴제 및 창업어가후견인제

□ 사업목적

○ 수산업부문 신규인력 유입 촉진과 창업어가의 안정적인 영어정착 도모

□ 지원대상

○ 수산업인턴

- 만 18~44세 이하의 미취업자 또는 사업시행년도 3월31일 현재 수산계 고등학교에 3학년으로 재학 중인 자 및 수산관련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신청자격이 없는 자 :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되어 육성자금을 지원 받은 자, 자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의 경영체에서 인턴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 수산업인턴 채용대상자(선도경영체)

- 신지식어업인, 전업경영인, 어업후계자 경영인, 영어조합법인 등

○ 후견인 지원대상자(창업어가)

-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되어 어업인후계자육성자금 지원받은(예정) 자

※ 자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후견인을 희망하는 자는 제외

○ 후견인

- 선도경영인, 신지식인, 수산·지도·연구직 퇴직공무원 및 수산계 대학교수 등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자금 사용용도

- 인턴의 노동력 제공 대가를 보상하기 위하여 선도경영체에 자금 지원
- 창업어가를 후견하는 후견인에 대해서 소요비용 및 서비스 대가로 자금 지원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수산업인턴 30명 이상, 창업어가후견인 20명 이상

□ 지원조건

○ 사업비 : 인턴제 180백만원, 창후견인제 120백만원(국고 100%)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 : 어선인력과

□ 신청기관 : 국립수산과학원(수산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수산정책과)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4권 188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2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사업

□ 사업목적

○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어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양식업 재생산활동을 뒷받침

□ 지원대상

○ 육상수조식 넙치 양식어업인

- 양식규모 중 수면적이 1,650㎡미만 제외

□ 사업내용

○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순보험료 및 부가보험료 지원

□ 재 원 : 일반회계

□ 자금유형

○ 순보험료 : 2,410백만원(국고보조 1,205, 자담 1,205)

○ 부가보험료 : 1,973백만원(국고보조 1,381, 자담 592)

□ 지원조건

○ 순보험료(총 보험료의 55%)중 50%보조

○ 부가보험료(총 보험료의 45%)중 70% 보조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어선인력과

□ 신청기관 : 수협중앙회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4권 191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3	수산부문 소득보전직불사업

□ 사업목적

○ 한·미 FTA 이행에 따른 미국산 수산물의 수입증가로 국산 수산물의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정부분 보전

□ 지원대상

○ 한미 FTA 발효에 따른 피해품종을 실제 어획 혹은 양식하는 어업인

*** 지원대상 품목은 한미 FTA 발효에 따른 피해발생시 FTA 이행지원위원회에서 사후 고시**

□ 사업내용

○ 한미 FTA 이행지원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지원 대상품목의 가격이 80%이상 하락시 하락폭의 85% 보전

○ 소득보전직불금 산출내역

- 품목별 평균생산량×지급단가(기준가격-당년 평균가격)×보전비율(0.85)

□ 재 원 : 수산발전기금

□ 자금유형

○ 수발기금 국고보조 1,500백만원('09년)

□ 지원조건

○ 정부보조 100%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시·도)

□ 사업담당부서 : 수산통상과

□ 신청기관

○ 생산자단체(연근해-수협, 원양-원양산업협회, 내수면-품목별 생산자 협회)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4권 192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4	어업인 정책보험 사업

□ 사업목적

○ 어업재해보상보험가입을 촉진하여 어업인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경영안정을 도모

□ 지원대상

○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선원 및 어선

- 어선원보험(100톤이상), 어선보험(20톤이상)은 부가보험료에 한하여 지원

□ 사업내용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의 순보험료 및 부가보험료 지원

□ 재 원 : 일반회계

□ 자금유형

○ 어선원보험 : 36,885명(총보험료 59,856백만원)

○ 어선보험 : 3,073척(총보험료 5,967백만원)

□ 지원조건 : 톤급별 차등지원

○ 어선원보험 : 순보험료(20~70%), 부가보험료(70%)

○ 어선보험 : 순보험료(60~70%), 부가보험료(70%)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인력과

□ 신청기관 : 수협중앙회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4권 194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5	수산인 안전공제 사업

□ 사업목적

○ 수산업 관련 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장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수산인의 생활안전도모 및 사회복귀 촉진

□ 지원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15세~84세 어업인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따라 어선원보험 당연가입대상자 및 임의가입한 자 제외

□ 사업내용

○ 수산인 안전공제의 순공제료 및 부가공제료 지원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수산인안전공제 : 78,000명(총 공제료 1,627백만원)

□ 지원조건

○ 순공제료 : 1,384백만원(국고보조 692, 자담 692)

○ 부가공제료 : 244백만원(국고보조 122, 자담 122)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인력과

□ **신청기관 :** 수협중앙회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4권 194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6	배수개선사업

□ 사업목적

○ 홍수발생시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피해 방지하고, 논에서의 원예작물 등 다양한 작물재배 여건을 구축

□ 지원대상

○ 홍수발생시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겪고 있고 농지로의 보전 가능성이 높은 농업진흥지역내 농경지의 배수개선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75년 ~ ○ 총사업비 : 43,252억원 ○ 사업규모 : 188천ha

□ 재 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자금유형

○ 배수장·배수문·배수로 등의 공사비 및 용지매수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으로 집행

□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 한국농촌공사

□ 사업담당부서 : 시·군·구 건설과, 한국농촌공사 해당지사 지역개발팀

□ 신청기관 : 시·군·구, 한국농촌공사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5권 195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7	방조제 개보수

□ 사업목적

○ 방조제(국가관리, 지방관리)중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기능이 저하되고 집중호우·태풍·해일 등으로 재해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을 개보수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

□ 지원대상

○ 방조제관리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라 국가관리방조제 또는 지방관리방조제로 지정된 방조제로서 다음의 사유로 개·보수가 필요한 방조제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68년 ~ ○ 총사업비 : 23,381억원 ○ 사업규모 : 3,490지구

□ 재 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자금유형

○ 방조제, 배수갑문 및 부속시설 등의 공사비, 용지매수보상비 및 시설 부대경비 등으로 집행

□ 지원조건 : 국고보조 70~100%

○ 국가방조제 ; 국고보조 100%, 지방방조제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 한국농촌공사

□ 사업담당부서 : 시·군·구 건설과, 한국농촌공사 해당지사 지역개발팀

□ 신청기관 : 시·군·구, 한국농촌공사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5권 196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8	한발대비용수개발

□ 사업목적

○ 가뭄발생지역의 당면영농을 위한 관정 및 간이용수원 개발·관리, 양수급수 유류대 및 전기료 지원 등의 용수대책비를 지원하여 가뭄으로 인한 영농피해 최소화

□ 지원대상 : 시·군·자치구, 한국농촌공사

□ 사업내용

○ 가뭄발생지역 관정개발, 간이용수원 개발, 양수저류, 저수지준설, 양수급수 유류대 및 전기료 지원, 지하수시설물 점검·정비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자금유형

○ '09년 예산 : 28,7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계	예 산 액 (균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기 타		
한발대비용수개발	관정개발 등	28,750	23,000	23,000	-	5,750	-

□ 지원조건 :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사업담당부서 : 농식품부(용수자원과 500-1835), 시·도(농정과 등), 시·군·구(건설과, 농정과 등), 한국농촌공사

□ 신청기관 : 시·군 농정과(또는 건설과, 산업과 등),한국농촌공사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5권 197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9	소규모용수개발사업

□ 사업목적

○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확보·공급하므로써 식량의 안정적생산 및 영농기계화로 안전·편의영농에 기여

□ 지원대상

○ 소규모(수혜면적50ha미만)용수개발사업에 필요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

□ 사업내용

○ 지구별 사업계획서상 사업량(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용수로 등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에 필요한 공종)

□ 자금유형

○ '09년 예산 : 26지구, 21,558백만원

구 분	계	국고보조	지방비	비 고
계	21,558	10,779	10,779	
○ 계 26지구 - 신규 8지구 - 계속 18지구	21,558	10,779	10,779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사업담당부서 : 농식품부(용수자원과 500-1835), 시・도(농정과 등), 시・군・구(건설과, 농정과 등)

□ 신청기관 : 시・군 : 산업과(또는 농정과 등), 한국농촌공사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5권 198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0	지표수보강개발사업

□ 사업목적

○ 농촌용수가 부족한 지역의 수원공(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등)의 시설을 확장·보강하여 안정적인 영농생산기반 조성

□ 지원대상

○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 지원

□ 사업내용

○ 지구별 사업계획서상 사업량(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용수로 등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필요한 공종)

□ 자금유형

○ '09년 예산 : 70지구, 61,039백만원

구 분	계	국고보조	지방비	비 고
계	61,039	61,039	-	
○ 계 70지구 - 신규 9지구 - 계속 52지구 - 준공 9지구	61,039	61,039	-	

□ 지원조건 : 국고 100%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

□ 사업담당부서 : 농식품부(용수자원과 500-1835), 시·도(농정과 등), 시·군·구(건설과, 농정과 등)

□ 신청기관 : 시·군 : 산업과(또는 농정과 등), 한국농촌공사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5권 200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1	농업생산기반조성

□ 사업목적

○ 집단화된 논을 대상으로 경지정리, 경작로확포장 및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하는 밭기반정비 등 생산기반을 정비하여 생산성 향상과 품질제고 도모

□ 지원대상

○ 사업비(균특회계) : 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촌공사사장

- 대구획경지정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밭기반정비 및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 등의 공사비 및 용지매수보상비, 시설부대경비로 집행

○ 조사설계비(농특회계) : 한국농촌공사사장

- 농어촌정비법 제7조의 기본조사 소요비용으로 집행

□ 사업내용

○ 대구획경지정리 : 집단화된 논을 대상으로 필지규모화, 농로, 용·배수로 등 생산기반 정비(봄마무리 3.7천ha, 가을착수 4천ha)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 경지정리지구 내 주요농로와 농산물 생산지, 가공·유통시설간 농로 확포장(1.1천㎞)

○ 밭기반정비 : 집단화 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 정비(계속 5.3천ha, 신규 3.6천ha)

○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 :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경작로확포장 등 생산기반정비사업을 수계 또는 권역단위로 종합정비(1지구)

□ 재원 및 지원조건

구 분	사업비 및 조사설계비		비 고
세부사업 ('09예산)	대구획경지정리(735억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914억원) 밭기반정비(780억원)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45억원)	'09예산은 국고기준
지원조건	국고 80%, 지방비 20%	국고 90%, 지방비 10%	
예산항목	지자체자본보조		
재 원	국고(균특회계)		

□ **사업주관기관·부서** : 시·군·구(건설과), 한국농촌공사 해당지사(지역개발팀)

□ **신청기관** : 시·군·구, 한국농촌공사 지사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5권 202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2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지역에 특화된 농수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농어가소득 증대 도모

○ 지역 핵심 농수산업을 중심으로 산·학·연·관의 혁신역량을 체계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양

□ 지원대상

○ 클러스터사업단으로 인정되는 법인 또는 법인화 계획이 있는 사업단

□ 사업내용

○ 혁신체계 및 네트워킹 구축 지원

- 클러스터 사업단 설치 및 운영지원, 전문경영인 지원, 참여주체 전문교육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킹 구축 등

○ 산업화 및 마케팅 지원

- 브랜드개발 및 관리, 유통전문 조직 구축, R&D, 홍보 및 마케팅,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등 S/W
- 통합물류센터, 친환경 종합지원센터, 홍보시설물 등 공동이용시설(H/W)

□ 재 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자금유형

○ 클러스터사업단별로 3년간, 평균 30억원(국고) 지원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단, 시설비는 자부담 20%)

* 추가비용은 자부담으로 추가 가능하며 시설물은 사업단 소유로 지상권 등기를 하거나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절차를 통하여 사업단에서 관리

□ 사업주관기관 : 시·도, 복수 시·군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팀(02-500-2033~2034)

□ 신청기관 : 시·도 및 시·군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5권 203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3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

□ 사업목적

○ 농산물의 선별·저온저장시설을 갖춘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을 통해 산지유통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 :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공동출자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시군유통회사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지자체 자본보조

○ 자금 사용 용도 : 집하장·선별장·포장장·예냉고·저온저장고 등 시설 및 선별기·결속기·수송차량·파렛트 등 유통장비류

□ 재 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자금유형

○ 사업규모(부지구입비 제외) : 신규시설은 20억원, 기존시설 보완은 8억원

□ 지원조건 :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팀(02-500-1987,1950)

□ 신청기관 : 시·군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5권 205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4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건립

□ 사업목적

○ 산지 생산자조직과 소비지 소매상 또는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유통비용 절감

□ 지원대상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고자하는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전문유통업체, 컨소시엄 업체

□ 사업내용

○ 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시설비, 물류장비구입비 지원

□ 자금유형

○ 회계 :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국고보조 및 융자)

□ 지원조건

○ 공공유형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생산자단체 유형 : 부지구입비 50%융자, 시설비 50% 보조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 유통정책단 유통정책팀 (☎02-500-1985)

□ 신청기관

○ 공공유형 : 시·도(유통정책과) → 농림수산식품

○ 생산자단체유형 : 시·군(유통정책과) →시·도 → 농림수산식품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5권 207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5	농어촌테마공원조성

□ 사업목적

○ 도시와 구별되는 농어촌 특유의 독특한 자연·문화·사회자원을 토대로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농촌주민과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레저·체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농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지원 대상지역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지역

○ 지원 대상지구 : 농식품부장관이 사업대상지구로 선정한 지구

□ 사업내용

○ 테마공원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휴양·레저·체험시설, 판매·숙박·음식 제공시설 등 관련사업 지원

- 기반시설 : 생태공원, 경관시설,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 체험·휴양시설 : 야영장, 학습관, 산책로
- 소득시설 : 농산물판매장, 숙박시설, 휴게소 등

□ 자금유형

○ 사업량 : 22지구

○ 사업비 : 19,094백만원(국고 9,547, 지방비 9,547) 보조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 : 도농교류과(☎ : 02-500-1813～4)

□ 신청기관

○ 시·군 건설과, 농정과 등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5권 208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6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 사업목적

○ 친환경 농업,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업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농가의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의 공동체 형성·복원 등에 기여

○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체험·휴양공간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여 농촌체험관광 및 도농교류 거점으로 활용

□ 지원대상

○ 농촌체험관광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농촌지역의 마을

- 농촌관광 추진을 위해 마을협정을 체결한 단일 마을 또는 둘 이상의 마을로서 사업시행지침상의 “대상마을 요건”을 갖춘 마을

□ 사업내용

○ 도시민 유치를 위해 필요한 마을 공동의 농촌체험기반시설, 마을경관 조성, 생활편의시설, 기타 S/W관련사업 등에 포괄적으로 사용

□ 재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자금유형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78개소	15,600	7,840	7,840	-	7,760	-

□ 지원조건

○ 지원금액 : 마을당 2억원 수준에서 지원 (국고50%, 지방비 50%)

*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지방비 추가지원 가능

□ 사업주관기관 : 농식품부(시·도지사)

□ 사업담당부서 : 농식품부 도농교류과(☎ : 02-500-1794)

□ 신청기관 : 시·도, 시·군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5권 209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7	전원마을조성사업

□ 사업목적

○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 조성을 지원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인구유지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시장・군수(한국농촌공사사장, 입주예정자)

＊ 수도권(서울,경기)과 광역시를 제외한 농촌의 읍・면지역(다만 읍지역은 신활력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시군에 속한 지역)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국고 70%, 지방비 30% 보조

○ 지원내용 : 전원마을조성을 위한 세부설계비, 진입도로, 마을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비 등

□ 재 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자금유형

○ 마을의 규모(주택 신축 기준)에 따라 10～30억원 범위내에서 차등 지원

＊ 보조금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입주자가 부담

□ 지원조건

○ 주택신축 가구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결정

- 20～29호 10억원 이내, 30～49호 15억원 이내, 50～74호 20억원 이내, 75～99호 25억원 이내, 100호 이상 30억원 이내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사업담당부서 : 농촌지역개발과

□ 신청기관 : 시장·군수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5권 211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8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 사업목적

○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떨어진 농촌 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 지원대상

○ 마을기반정비, 농촌경관개선, 문화・복지시설, 환경보전시설 등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보조(국비 70%, 지방비 30%)

□ 재 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자금유형

○ '09사업량 550개면(구), 사업비 449,905백만원(보조 314,934, 지방비 134,971)

□ 지원조건

○ 지원규모 : 정주면 면당 30억원, 오지면 면당 평균 25억원(면에 따라 15~49억원)

○ 지원방법 : 면단위별로 한도액내에서 2~5년내 완료 위주로 지원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 : 농촌지역개발과

□ 신청기관 : 시장・군수, 구청장(15개 광역시 준농어촌자치구)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5권 212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9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

□ 사업목적

○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농어촌지역 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향상에 기여

□ 지원대상

○ 광역 및 지방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20호 이상 마을

□ 사업내용

○ 수원공 개발 : 지하 암반관정 개발

○ 이용시설 : 송·배수관, 수조(물탱크), 정수시설, 계량기, 소화전 등

* 농가별 내부배관시설은 수혜자 부담

□ 재 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자금유형

○ 지자체보조

□ 지원조건

○ 지구당 평균 170백만원(국고 80%, 지방비20%)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 : 농촌지역개발과

□ 신청기관 : 각 시·도는 시·군의 신청 자료를 취합하여 신청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5권 213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0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사업목적

○ 농촌마을을 쾌적한 농촌정주공간으로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 및 도·농 균형발전 도모

□ 지원대상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조에 의한 농산어촌지역 중 읍·면 지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농지법, 산림법, 자연공원법 등 타법에 의하여 개발에 제약요인이 없는 지역

○ 동일한 생활권·영농권 등으로 지역주민간 동질성과 유대감을 가지며, 인근 마을간 연계로 소규모의 권역을 이룰 수 있는 지역

□ 사업내용

○ 지역실정에 따라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기초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 확충, 지역사회유지를 위한 인구유치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종합 추진

□ 재 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자금유형

○ 기본계획수립 45권역(민간보조), 사업시행 169권역(지자체보조)

□ 지원조건

○ 권역규모에 따라 40~70억원 범위내 차등지원(국고70%, 지방비30%)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 : 농촌지역개발과(02-500-1805)

□ 신청기관 : 각 시·도는 시·군의 신청 자료를 취합하여 신청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5권 215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1	농공단지조성사업

□ **사업목적**

○ 농어촌지역에 저렴한 공장부지를 조성,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일자리창출·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14년까지 400개소 조성 목표로 추진 중

□ **지원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87조 내지 제88조(농공단지 개발의 지원),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단지조성비의 지원)

□ **지원대상 :** 시장·군수(공영개발), 민간실수요자(전문·지역특화단지)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및 융자

○ 교부조건 : 부지조성비(용지취득비, 단지시공비, 부대시설 등)

□ **재 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융자)

□ **자금유형**('09년도)

○ 사업량 : 53개소(신규 18, 계속 35), 사업비 : 59,798백만원(국비 보조)

□ **지원조건**

○ 보조 : 정액지원(3.3058㎡당 15~70천원 지원)

○ 융자 : 연리 5.0%,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사업주관기관** : 지자체(시장·군수)

□ **사업담당부서** :

□ **신청기관 :** 지자체(시장·군수)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5권 217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2-①	신활력지역지원사업

□ 사업목적

○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낙후지역을 활력지역으로 육성하여 장기적 자립발전기반 마련

□ 지원대상

○ 제2기 신활력지역으로 선정·고시된 70개 시·군

□ 사업내용

○ 기존 낙후지역사업과는 다른 개발방식을 채택, 지역이 주체가 되어 내부역량을 키우고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S/W위주 지원

□ 재 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개발계정)

□ 자금유형

○ 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 국고 100%

○ 지원한도액 : 시·군별 낙후도에 따라 19~29억원 지원

□ 사업주관기관 : 시·군

□ 사업담당부서 : 농촌산업과

□ 신청기관 : 시·군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5권 218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2-②	향토산업육성사업

□ 사업목적

○ 농촌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향토자원을 개발하여 다양한 1차·2차·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지역경제의 활력증진

□ 지원대상

○ 농업인, 생산자단체, 향토기업체, 연구단체 등

※ 산·학·연·관 등 다양한 사업주체가 참여하는 클러스터형 사업추진단 구성 의무화

□ 사업내용

○ 산·학·연·관 등 사업주체간 네트워크, 역량제고, 컨설팅, 마케팅 등 S/W분야 및 향토자원 산업화에 필요한 H/W분야 포괄지원

□ 재 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개발계정·지역혁신계정)

□ 자금유형

○ 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

※ 지방비 부담의 경우, 부담액의 일부를 사업수혜자가 부담하도록 지자체에서 자율 시행 (예시 :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지원한도액 : 사업추진단별 30억원(국고 15) 이내, 매년 평균 10억원(국고 5)

※ '07~'08년 신규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09년도에 2~3년차 사업이 추진되는 계속사업의 경우는 1~3년간 30억원이내 (국고 15억원)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사업담당부서 : 농촌산업과

□ 신청기관 : 시·군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5권 218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2-③	특화품목육성사업

□ 사업목적

○ 농촌지역에 고유한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농가 소득증대

□ 지원대상

○ 농업인조직, 생산자단체, 농산물가공업체

□ 사업내용

○ 농촌지역에 고유한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시설·장비 등 H/W 지원

□ 재 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개발계정)

□ 자금유형

○ 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기준보조율)

* 지방비 부담의 경우, 부담액 중 일부를 사업수혜자가 부담하도록 지자체에서 자율 시행 (예시 :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지원한도액 : 단위사업당 총사업비 20백만원(국고 10, 지방비·자부담 10)~1,000백만원(국고 500, 지방비·자부담 500) 이내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사업담당부서 : 농촌산업과

□ 신청기관 : 시·군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5권 219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3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 사업목적

○ 농업인의 농작업 편이화 장비 보급을 통한 농업 노동 부담 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
○ 농작업 편이장비의 발굴 및 확산으로 인간공학적인 농작업 환경 조성
○ 고령 및 여성 농업 인력도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농작업 여건 조성

□ 지원대상

○ 주작목 농가 비율이 높고 영농규모가 커서 파급효과가 큰 단체 또는 마을
○ 농작업량이 과다하여 개선이 필요하고 보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단체 또는 마을
○ 회장·이장·지도자 등 대표자의 지도력이 탁월하며 참여마을 및 조직의 활동이 활발하고 화합이 잘되는 단체 또는 마을

□ 사업내용

○ 사업추진위원회 및 사업대상자의 교육, 견학 등 사업기반조성
○ 농작업 여건 및 편이장비의 조사, 선정, 보완 개발, 평가 등 전문가 컨설팅
○ 지역별·작목별 특성에 맞는 편이장비 보급
- 지역별, 작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개발된 편이장비
- 지역별, 작목별 농작업 여건에 적합하게 개발된 편이장비 등

□ 재 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자금유형

○ 147개소, 7,350백만원(개소당 5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조건 : 개소당 50백만원(자치단체보조)

□ 사업주관기관 : 시군 농업기술센터

□ 사업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 농촌지원국 농촌생활과
○ 도 : 농업기술원 농촌생활자원(기술, 지원)과·팀
○ 시군 자치구 : 농업기술센터 농촌생활 업무 관련 팀·담당

□ 신청기관 : 시군농업기술센터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5권 220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4	산촌생태마을 조성

□ 사업목적

○ 낙후된 산촌마을의 생활환경개선 및 주민소득 증대로 삶의 질 향상

□ 지원대상

○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산촌마을 중에서 당해년도 조성대상 마을

□ 사업내용

○ 주민역량강화 : 산촌생태마을 지도자 양성, 전문가 육성 등

○ 주민소득(생산) : 생산소득기반조성, 특화품목개발 및 재배, 전자상거래 기반 등

○ 주민소득(체험) :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산촌체험시설조성

○ 생활환경개선 : 생활기반조성, 마을경관개선

□ 재 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자금유형 (2009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마을)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균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99	35,059	25,420	25,420	-	9,639	-
마을조성	69	31,330	21,961	21,961	-	9,369	-
사전설계	30	2,850	2,580	2,580	-	270	-
인센티브	-	879	879	879	-	-	-

□ 지원조건

○ 마을조성 : 마을당 총사업비 14억원 또는 16억원(사업기간 2년)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생산소득사업은 마을공동부담률 20%)

○ 사전설계 : 65백만원(기본계획, 실시설계 및 시설부대비 포함)

○ 사전재해영향성평가용역 : 30백만원 (국고 70%, 지방비 30%)

□ 사업주관기관 : 시·군 지자체

□ 사업담당부서 : 시·도, 시·군 지자체의 산림관련부서

* 산림청 소관부서 : 산림이용국 휴양등산과 (042-481-4122, 4124)

□ 신청기관 : 시·군 지자체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5권 222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5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 사업목적

○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저장과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식품 공급체계 구축

□ 지원대상

○ 수협(중앙회), 어촌계, 어업인후계자, 영어조합법인, 어업인, 일반인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보조

○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수산물처리·저장시설, 굴박신장시설, 젓갈타운조성, 전복진주산업센터 신축 및 김가공공장 현대화사업

□ 재 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자금유형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60,578**	**32,900**	**71,558**	**74,741**	**222,547**
보 조	**19,951**	**11,390**	**26,159**	**27,896**	**74,788**
지방비	**17,522**	**10,790**	**24,389**	**25,796**	**72,058**
자부담	**23,105**	**10,720**	**21,010**	**21,049**	**75,911**
ㅇ수산물산지가공시설	19,345	20,233	45,100	45,673	161,833
- 보 조	6,711	6,070	13,530	13,702	49,291
- 지방비	5,182	6,070	13,730	13,702	48,881
- 자부담	7,452	8,093	17,840	18,269	63,961
ㅇ수산물처리저장시설	27,100	6,000	19,700	21,000	28,600
- 보 조	9,000	3,000	9,850	10,500	12,100
- 지방비	8,100	2,400	7,880	8,400	9,780
- 자부담	10,000	600	1,970	2,100	6,720
ㅇ굴박신장공장시설	14,133	5,067	3,000	200	12,000
- 보 조	4,240	1,520	900	60	3,600
- 지방비	4,240	1,520	900	60	3,600
- 자부담	5,653	2,027	1,200	80	4,800
ㅇ젓갈타운조성		1,600	2,358	4,046	13,186
- 보 조		800	1,179	2,023	6,548
- 지방비		800	1,179	2,023	6,548

○ 전복진주산업센터			1,400	822	4,778
- 보 조			700	411	2,389
- 지방비			700	411	2,389
○ 김가공공장현대화사업				3,000	2,150
- 보 조				1,200	860
- 지방비				1,200	860
- 자부담				600	430

□ 지원조건

○ 지원기준

구 분	지원조건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국고 30%, 지방비 30%, 자담 40%
수산물처리・저장시설	국고 50%, 지방비 40%, 자담 10%
굴박신장공장시설	국고 30%, 지방비 30%, 자담 40%
젓갈타운조성	국고 50%, 지방비 50%
전복진주산업센터	국고 50%, 지방비 50%
김가공공장현대화사업	국고 40%, 지방비 40%, 자담 20%

○ 지원규모

구 분	사업량(개소)
수산물산지가공시설(38)	부산시(2), 강원도(2), 충남도(3), 전북도(2), 전남도(15), 경북도(5), 경남도(6), 제주도(3)
수산물처리・저장시설(8)	경기도(1), 강원도(1), 전남도(2), 경남도(2), 제주도(2)
굴박신장공장시설(1)	전남도(1)
젓갈타운조성(3)	강원도(1), 전북도(1), 전남도(1)
전복진주산업센터(1)	전남도(1)
김가공공장현대화사업(14)	전남도(14)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장・군수)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 수산정책과(02-500-2313)

○ 시・도(시・군・구) : 해양수산과 등 수산관련 부서

□ 신청기관 : 시・도(시・군・구)의 해양수산과 등 수산관련 부서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5권 223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6	수산식품 거점단지조성사업

□ 사업목적

○ 지역별로 풍부한 해양수산식품자원을 활용한 고품질의 수산식품개발과 브랜드화로 지역특화산업의 전략적 육성 도모

○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을 통한 수급 및 공급 기능 강화 및 유통단계 축소로 어업인의 소득증대 기여

□ 지원대상

○ 수산가공품 개발을 위한 연구, 가공시설 신축 및 수산물 유통시설을 확충이 필요한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지자체 등

□ 사업내용

○ 수산가공품 개발을 위한 연구, 가공시설 신축 및 수산물위판장, 직매장, 유통센터, 복합공간단지 조성 등 수산물 유통시설 신축, 증·개축

□ 재 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자금유형 : 자치단체자본보조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단, 여수수산물종합센터 조성사업은 국고 50%, 지방비 40, 자담10)

□ 사업주관기관 : 시·도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 수산정책과(02-500-2313~4, 2356~7)

○ 시·군(시·도) : 해양수산과 등 수산관련부서와 도매시장, 위판장 등 관련부서

○ 수협 : 도매시장, 위판장 등 관련부서

□ 신청기관 : 시·군 수산물 가공 및 유통시설 관련부서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5권 223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7	양식어장정화사업

□ 사업목적

○ 사업목적 : 연안어장의 환경을 보전·개선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공급 기반을 조성

○ 시책 및 추진방향

- 오염이 심화되었거나 우려되는 해역(만) 및 어업권 밀집해역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집중적인 어장정화사업 실시
- 일반 양식어장 중심에서 주 오염해역 중심으로 어장정화 실시

□ 지원대상

○ 양식장별 대상어종

○ 대상자

- 어촌계, 수협 및 양식어업, 마을어업, 정치망 어업면허 또는 해상종묘생산어업, 정치성구획어업 허가를 득하고 어장정화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

□ 사업내용

○ 어장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어장정화·정비사업을 위한 퇴적물 수거, 바닥갈이, 객토, 저질준설, 수로개설, 어장재배치, 해적생물 구제 등 어장정화 및 이를 위한 조사·설계·감리

□ 재 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자금유형 : 어장정화·정비사업비 총금액의 80%를 국고 지원

□ 지원조건

○ 국고보조 80%, 지방비 10%, 자담 10%(자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구)

□ 사업담당부서 : 해양수산 사업부서

□ 신청기관 : 시·군·구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5권 224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8	수산물유통시설건립사업

□ 사업목적

○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을 통한 수급 및 공급 기능 강화 및 유통단계 축소로 어업인의 소득증대 기여

□ 지원대상

○ 수산물위판장, 직매장, 유통센터, 복합공간단지 조성 등 수산물 유통시설을 희망하는 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지자체 등

□ 사업내용

○ 수산물위판장, 직매장, 유통센터, 복합공간단지 조성 등 수산물 유통시설

□ 재 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자금유형 : 자치단체자본보조

□ 지원조건

①수산물 위판장 : 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②수산물 직매장 : 보조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③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 ④수산물유통물류센터, ⑤임자전장포옛명성회복,
⑥친환경김물류기지조성 : 보조 50%, 지방비 50%
⑦전복일류화상품개발기지 : 보조 50%, 지방비 25%, 자부담 25%
⑧전통발효식품용기현대화 : 보조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⑨소형저온저장고 설치 : 보조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⑩수산물도소매장 조성 : 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주관기관 : 시·도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 수산정책과(02-500-2356~7)
○ 시·군(시·도) : 도매시장, 위판장 등 관련부서
○ 수협 : 도매시장, 위판장 등 관련부서

□ 신청기관 : 시·군 수산물 유통시설 관련부서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5권 225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9	어항기반시설조성

□ 사업목적

○ 어선안전수용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

○ 완공위주의 집중투자로 투자효과 극대화

○ 수산세력 및 이용도가 높은 어항 우선개발

□ 지원대상

○ 지원대상자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지원대상시설 : 지방어항 어항기본시설, 전체어항의 인양기, 부잔교 등

□ 사업내용

○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실시 설계비에 사용

□ 재 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자금유형

○ 지방어항건설 : 10개시・도 46,926백만원, 국비80%, 지방비20%

○ 소형어선인양기설치 : 8개시・도 2,625백만원, 국비50%, 지방비50%

○ 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사업 : 1개시・도 700백만원, 국비50%, 지방비50%

□ 사업주관기관 : 광역시장・도지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 수산정책실 어항과(02-500-2337)

○ 시・도 : 해양수산과 또는 어항개발업무 등 담당부서

○ 시・군・구 : 해양수산과 또는 어항개발업무 등 담당부서

□ 신청기관

○ 일반인은 해당 시・군・구 해양・수산관련 업무과로 사업 건의(신청)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5권 226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0	어촌・어항관광조성

□ 사업목적

○ 어촌지역의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정주환경시설 개선을 통한 어업인의 삶의질 향상과 더불어, 도시/어촌간 교류확대로 어업외 소득증대를 도모

□ 지원대상

○ 지원대상자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지원대상시설 : 어촌의 생산/소득기반시설,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시설, 관광기초기반시설 등

□ 사업내용

○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

□ 재 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어촌종합개발 : 6개시・도 18,082백만원, 국비70%, 지방비25%,자담5%

○ 어촌관광개발 : 7개시・도 7,982백만원, 국비50%, 지방비50%

○ 어촌체험마을 : 4개시・도 2,150백만원, 국비50%, 지방비45%,자담 5%

○ 체험마을사무장지원 : 10개시・도 180백만원,국비50%,지방비40%,자담10%

□ 사업주관기관 : 광역시장・도지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 수산정책실 어항과(02-500-2338)

○ 시・도 : 해양수산과 또는 어촌개발업무 등 담당부서

○ 시・군・구 : 해양수산과 또는 어촌개발업무 등 담당부서

□ 신청기관

○ 일반인은 해당 시・군・구 해양・수산관련 업무과로 사업 건의(신청)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 5권 227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